



연구보고서 2013-05

식품분야 규제정책의 변화와 향후 식품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정기혜 · 김어지나 · 김동우 · 조주연 · 김동영 · 정병규

【책임연구자】

정기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요저서】

식품위해정보교류 선진화 방안

국무총리실, 2012(공저)

2012년 서울시 음식점 위생등급평가

서울시, 2012(공저)

【공동연구진】

김어지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위원

김동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조주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김동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정병규 국무총리실 규제총괄과장

연구보고서 2013-05

**식품분야 규제정책의 변화와 향후
식품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발행일 2013년

저자 정기혜 외

발행인 최병호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우:122-705)

전화 대표전화: 02)380-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인쇄처 대명기획

가격 6,000원

발간사 <<

우리나라의 식품안전을 관리하는 법령은 식품위생법 등 총 8종의 법령이 있는데 특히 1962년 제정된 식품위생법은 식품안전관리의 기초가 되고 있다.

2012년 말 현재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총 200여 차례의 제개정을 거쳐 오늘의 식품안전 규제정책이 완성되었다. 식품안전분야는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식품위생법 제정 이후 지속적으로 규제 신설, 강화 등의 정책이 이어져오다가 1998년 국민의 정부시절에 규제 총량제를 실시하여 현존 규제의 50%를 폐지하는 획기적인 규제정책이 단행되었고, 그 이후 사회규제로써 식품규제는 다시 강화되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최근 2~3년간은 규제정책 개선이 답보상태에 있어 강화, 완화, 신설, 폐지 등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식품안전분야 규제정책의 근간이 완성되어 시의성 있는 규제정책만이 수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올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준비한 규제정책의 변화는 내년에 가시화될 것이다.

1960년대 이후 최근까지의 식품안전분야에 대한 규제정책을 분석한 이 연구는 향후 식품분야 연구의 근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이 연구결과는 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히는 바이다.

2013년 1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 병 호



목 차

Abstract	1
요 약	5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6
제2장 우리나라 규제개선 정책 현황	23
제1절 규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	23
제2절 우리나라 규제개선 추진체계와 성과	27
제3절 우리나라 규제정책 동향과 변화 추이	38
제4절 외국의 규제개혁 동향	42
제3장 식품분야 규제개선 동향 및 관리 방향	49
제1절 식품규제 현황 및 특성	49
제2절 식품분야 규제개혁 추진 현황	60
제3절 식품안전 분야의 규제개선 방향	63
제4장 식품안전규제 개선내용 분석	69
제1절 식품안전 법령 체계	69
제2절 식품안전법령 규제개선 현황	72

제5장 식품안전관리 합리화를 위한 향후 규제개선 방향	97
제1절 현황 및 문제점	97
제2절 식품규제 개선에 대한 인식	101
제3절 현 정부의 규제개선 방향	105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11
제1절 결론	111
제2절 정책제언	112
참고문헌	115
부 록	117
부록 1. 식품위생법 규제개선 내용(2000년 이후)	117
부록 2.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내용	137

표 목차

〈표 2- 1〉 '08~'12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실적	33
〈표 2- 2〉 등록규제 현황	39
〈표 2- 3〉 우리나라 규제성격별 현황	39
〈표 2- 4〉 법령 심사 위원회 개최 현황	40
〈표 2- 5〉 중요규제 및 개선.철회권고 현황	40
〈표 2- 6〉 우리나라 규제등록 변동 추이	41
〈표 2- 7〉 한국, 미국, 영국의 규제개혁 법제 비교	45
〈표 3- 1〉 식품산업 규모	49
〈표 3- 2〉 식품류 수입현황(톤)	50
〈표 3- 3〉 법령별 식품안전 규제 현황(2013.6월말 기준)	53
〈표 3- 4〉 우리나라 규제등록 부처별 동향	54
〈표 3- 5〉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 등록규제 현황	56
〈표 3- 6〉 식품의약품안전청 등록규제 성격별 현황	57
〈표 3- 7〉 부처별 식품관련 세부 규제내용	58
〈표 3- 8〉 부처별 식품관련 주요 개혁 내용	62
〈표 4- 1〉 식품안전 법령 제정현황	70
〈표 4- 2〉 식품 관련 주요 법령 목적 및 내용	71
〈표 4- 3〉 연도별 제개정 회수 현황	72
〈표 4- 4〉 제개정 유형별 현황	73
〈표 4- 5〉 1960년대 식품위생법 개정안 중 규제 내용	73
〈표 4- 6〉 1970년대 식품위생법 개정안 중 규제 내용	74
〈표 4- 7〉 1980년대 식품위생법 개정안 중 규제 내용	75
〈표 4- 8〉 1990년대 식품위생법 개정안 중 규제 내용	75
〈표 4- 9〉 2000년대 이후 식품위생법 개정안 중 규제 내용	76
〈표 4-10〉 1960년대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 중 규제 내용	78
〈표 4-11〉 1970년대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 중 규제 내용	79

〈표 4-12〉 1980년대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 중 규제 내용	80
〈표 4-13〉 1990년대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 중 규제 내용	81
〈표 4-14〉 2000년대 이후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 중 규제 내용	82
〈표 4-15〉 연대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규제개선 현황	83
〈표 4-16〉 2010년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법령 심사결과	85
〈표 4-17〉 2012년 부처별 규제개혁과제 현황	86
〈표 4-18〉 2008년 이후 식품안전분야 규제 등록 신설 목록	86
〈표 4-19〉 2008년 이후 식품안전분야 규제 등록 강화 목록	88
〈표 4-20〉 2008년 이후 식품안전분야 규제 등록 완화 목록	90
〈표 4-21〉 식약처로 이관된 「축산물위생관리법」상의 업무	90
〈표 4-22〉 식약처로 이관된 「농수산물품질관리법」상 농산물 안전관련 업무	92
〈표 5- 1〉 법률안 발의건수 및 처리현황	99
〈표 5- 2〉 조사 개요	101
〈표 5- 3〉 현행 식품안전 규제 정책에 대한 업체의 불만사항	104

그림 목차

[그림 1-1] 자료처리 과정	19
[그림 2-1] 규제도입 관련 정부입법 절차	30
[그림 2-2] 신설강화규제 심사 흐름도	32
[그림 4-1] 식품안전 관련 주요 법령	69
[그림 5-1] 조사대상자 소비자의 일반적 특성	102
[그림 5-2] 조사대상자 식품업체의 일반적 특성	103



Abstract <<

Regulatory Policy Changes in Food Sector and Rationalization of Food Safety Regulations for Enhanced Food Safety Manage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history of regulatory policy changes in food safety sector with enactment and amendment status of laws, enforcement ordinances, and enforcement regulations and to propose the appropriate direction of regulatory policy for enhanced food safety management.

Regulation is defined in two ways. First, regulation in a narrow sense is a government interference in the market mechanism. Second, regulation in a broad sense is not limited to the economic area, but connotes overall government interventions for the maintenance of social order. With budget and administrative organization, regulation is counted as a role of "Hidden tax."

Regulation can be classified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and standard of regulation registration. Classifications of regulation by characteristics are economic regulations (2,695 cases), social regulations (2,302 cases), and administrative regulations (1,955 cases). Also, regulations divided by standard of regulation registration are main regulations and subordinate regulations.

Total 202 cases of enactment and amendment of Food Sanitation Law has been made from its first enactment in 1962 to the first half year of 2013. Until 1998, continuous regulations and

2 식품분야 규제정책의 변화와 향후 식품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establishment of new regulations were mainstream than deregulation or abolition. After enforcement of total emission regulation, which abolished 50% of existed regulations, by Kim, Dae-Jung Government, food safety regulation had been weakened with such as abolition of regulations. Also, base of food safety management had been weakened as well. Since then, enhancing and establishing regulations have been leaded as the main trend to cope with enhancing food safety management, harmonizing international standards, and expanding food safety management area. Especially, under the "National Happiness" which is a national keynote by present government, enhancing and establishing regulations are expected in priority in food regulatory rationalization for eradication of unsanitary food.

According to investigation of perception on food regulatory, complaints on frequent establishment and amendment of law showed 3.82 points out of 5 points.

Establishing and enhancing the regulatory have been used for government policy instrument. Since food safety has become a new social risk, the importance of food regulatory is growing fast. Therefore, it is right time to promote enhanced regulatory policy in food safety. Rationalization of regulations including enhancing safety regulations and mitigating or abolishing regulation procedure in food safety sector is needed.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 필요성

- 우리나라의 식품안전정책은 1962년 「식품위생법」이 제정되면서 틀을 잡아가기 시작하였음.
 - 식품위생법 제정 이후 2003년에 「건강기능식품관리법」, 2008년에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그리고 2007년에 「식품안전기본법」이 추가로 제정되었음.
- 식품안전 분야는 사회규제로써 사회가 선진화되고, 국민 개인의 삶의 질 수준이 향상되면서 관리 요구가 커지는 5대 사회 안전 분야의 주요한 부분임.
 - 식품안전 분야는 과거 질병, 가난 등 전통적인 사회위험과 더불어 새로운 사회위험(Social Risk)화 될 수 있는 분야임.
- 우리나라는 식품안전의 특성보다는 규제정책의 일환으로 식품안전 규제를 관리하여 왔으며, 특히 김대중 정부에서는 현존 규제의 50%를 폐지하는 규제총량제를 추진하면서 식품안전 분야의 규제정책은 규제완화가 주류를 이루었음.
- 국제적으로는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후 세계 교역이 자유화, 개방화되면서 국내 규제정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음.
 - 국내산 제품과 외국산 제품에 대한 규제를 차별화할 수 없게 된 것임.

4 식품분야 규제정책의 변화와 향후 식품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해 식품분야 안전규제는 합리화되어야 하는데
여지껏 식품안전규제 수준이 국제기준에 비해 비교적 낮았던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강화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 영세업체는 물론 대기업이라도 일부 관리 분야에서의 규제강화는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음.
- 최근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농업국이자 수출국인 미국, 중국 등보다
는 식품규제가 강력한 유럽정책을 벤치마킹하고 있는 추세임.
- 박근혜 정부의 4대 사회약 근절이 국정목표로 불량식품 근절이 중
요한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식품안전 분야의 규제정책 합
리화는 더욱 중요해 지고 있음.

□ 연구목적

이 연구에서 식품위생법 제정이후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제개정 현황을 분석하여 식품안전 규제정책의 변천사를 분석하고, 향후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적절한 규제정책 방향을 제시함으로 세부목적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우리나라 규제정책에 대한 고찰
- 둘째, 식품안전 규제정책에 대한 고찰
- 셋째, 식품안전 규제 정책의 연대별 변화 추이 분석
- 넷째, 외국의 식품규제정책에 대한 사안별 고찰
- 다섯째, 식품안전관리 합리화를 위한 정책 제언

2. 주요 연구결과

□ 규제의 정의 및 역할

- 규제는 시장 메커니즘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의미하는 협의의 규제와 경제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정부의 개입활동 전체를 의미하는 광의의 규제로 정의되고 있음.
- 규제는 예산, 행정조직과 더불어 3대 정책수단 중의 하나로 감추어진 조세(hidden tax)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음.
- 정부의 규제개선은 신설된 규제의 엄격한 관리와 기존규제의 지속적 정비라 할 수 있음.

□ 규제구분

- 규제성격으로 통상 경제규제, 사회규제, 행정규제로 분류되며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규제 2,695건, 사회규제 2,302건, 그리고 1,955건의 행정규제로 구성되어있음.
- 규제 개선은 규제신설¹⁾, 강화, 완화, 폐지, 타법이관 등의 방식으로 추진됨.
- 규제를 등록 기준으로 분류하면 주된규제와 부수적 규제²⁾로 구분되

1) 규제를 신설하는 것은 이미 확정된 정책내용을 법규에 구체화하는 사후적 조치이면서도, 별도의 중요한 정책검토 과정으로 여타 법규과의 충돌여부, 형평성 문제, 중복 규제 여부 등을 검토하고, 규제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하위규정이 상위규정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지 점검하는 과정임.

2) 부수규제란 주된 규제로부터 파생되는 것으로 내용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규제로, 주된 규제를 부과하기 위한 사전절차적 규제와 주된 규제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사후보완적 규제로서 주된 규제의 일부분이 되는 규제를 의미함.

6 식품분야 규제정책의 변화와 향후 식품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며 2013년 현재 총 14,177건(주규제 7,182건 + 부수규제)이 등록되었음.

□ 식품안전 규제개선

- 1962년 식품위생법 제정 이후 2013년 상반기까지 제·개정된 식품위생법의 총량은 202회로 나타났으며 연대별로는 2000년대 이후에 상대적으로 많은 규제 개선이 있었음.

〈표 1〉 연도별 제개정 총괄현황

구분	계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합계	202	21	26	28	36	91
식품위생법	47	2	3	3	10	29
식품위생법 시행령	72	6	8	8	17	3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83	13	15	17	9	29

- 규제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1962년 식품위생법 제정 이후 1998년 김대중 정부의 규제총량제 실시 전까지 지속적인 규제의 신설 및 완화가 폐지보다 주류를 이루었음.
- 김대중 정부에서 현존 규제의 50%를 폐지한 규제총량제 실시로 사회규제인 식품안전규제도 규제폐지 등으로 식품안전관리 기반의 약화를 초래하였음.
- 이후 사회규제로써 식품안전관리 강화, 국제기준 조화, 식품안전관리 영역 확대 등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제강화, 신설이 또한 주된 추세로 이어지고 있으며,

- 특히 현 정부의 국민행복이라는 국정기조에 맞게 불량식품 근절 등을 위한 식품규제 합리화는 규제강화, 신설이 우선시될 것으로 예견됨.

□ 식품규제에 대한 인식조사

- 잦은 법령 제개정에 대한 불만도가 5점 만점에 3.82점으로 조사되었음.

3. 결론 및 시사점

- 식품안전이 새로운 사회위험(Social Risk)이 되면서 식품규제정책의 중요성은 커가고 있음.

- 그간 식품안전 규제정책의 동향은 1962년 식품위생법 제정이후 규제 신설과 강화가 주된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김대중 정부 때의 규제총량제에 의해 나타나고 있는 폐단을 해결하고, 1995년에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 기조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기준과의 조화 등을 위해 필요한 규제정책 강화가 추진되어야 할 시점으로 볼 수 있음.

- 특히 불량식품 근절이라는 현 정부의 국정기조를 달성하기 위해 또 다른 규제정책의 강화가 완화나 폐지보다 우선되겠지만 식품안전 분야의 규제 정책 합리화는 안전규제는 강화하고, 절차적 규제는 완화 혹은 폐지하는 등의 규제합리화가 필요함.

* 주요용어: 식품안전, 규제정책, 규제합리화, 규제개선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 필요성

우리나라의 식품안전정책은 1962년 「식품위생법」이 제정되면서 틀을 잡아가기 시작하였다. 식품위생법 제정 이후 2003년에 「건강기능식품관리법」, 2008년에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그리고 2008년에 「식품안전기본법」이 추가로 제정되면서 식품위생법이 포함하지 못한 부분과 시의성을 반영하게 되었다.

식품안전 분야는 사회규제로써 사회가 선진화되고,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수준이 향상되면서 관리 요구가 커지는 5대 사회안전 분야의 주요한 부분이다. 지난 정권에서 발발하였던 미국산 쇠고기 파동으로 인한 촛불시위 등은 안전관리가 소홀할 시 나타날 수 있는 사회현상을 대변해준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식품안전 분야는 과거 질병, 가난 등 전통적인 사회위험과 더불어 새로운 사회위험(Social Risk)화 될 수 있는 분야가 되고 있다.

식품안전 규제정책이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하는 당위성이 여기에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식품안전의 특성을 고려한 규제정책을 펼치기 보다는 규제정책의 일환으로 식품안전규제를 관리하여 왔으며, 특히 김대중 정부에서는 경제규제와 마찬가지로 현존 규제의 50%를 폐지하는 규제총량제를 추진하면서 식품안전 분야의 규제정책은 규제완

화가 주류를 이루었고, 그 이후 현재까지 시의성 있는 규제정책 합리화를 위해 규제 강화, 신설 등이 주로 검토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이지만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후 세계 교역이 자유화, 개방화되면서 국내 규제정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국내산 제품과 외국산 제품에 대한 규제를 차별화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즉, 국제 규제와 조화를 이루어야 함으로 식품안전은 식품별 여러 기준, 규격이 국제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CODEX)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WTO에 제소당할 수 있는 것이다.

식품분야 안전규제가 합리화되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로 국제기준에 비추어 규제 정도가 낮아도, 높아도 안 되는 것이다. 하지만 여지껏 식품안전규제 수준이 국제기준에 비해 비교적 낮았던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제정책 개선이 검토되고 있고 이런 일련의 조치들은 영세업체는 물론 대기업이라도 일부 관리 분야에는 기업에 부담을 주는 정책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국제적인 식품안전규제 정책을 살펴보면 대표적인 농업국이자 수출국인 미국, 중국 등은 식품안전규제가 비교적 자유로운 편인 반면에 유럽은 식품규제가 강력한 편이다. 우리나라는 여지껏 주로 미국 및 일본의 정책을 답습하다가 최근 유럽의 정책을 눈여겨보기 시작하였고, 독일 등 국가별 교류도 강화하는 추세이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4대 사회약을 근절하여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국정목표가 추진되고 있는데 4대 사회약에 불량식품이 포함되었고 불량식품 근절이 중요한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어 식품안전 분야의 규제정책 합리화는 더욱 중요해 지고 있다.

2. 보고서 구성

이 보고서는 총 6장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이 정리되어있고, 제2장은 우리나라 규제정책 전반 및 일반적인 규제정책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하였고, 제3장은 식품안전 분야로 한정하여 규제정책에 대한 고찰을 하였다. 제4장은 식품위생법 제정 이후 이루어진 규제개선 정책을 연대별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가 정리되어있고, 제5장에는 향후 추진해야 할 규제정책 방향 등을 제시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이 연구의 결론과 정책제언을 개진하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3. 연구목적

이 연구에서 식품위생법 제정 이후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제개정 현황을 분석하여 식품안전 규제정책의 변천사를 분석하고, 향후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적절한 규제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세부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우리나라 규제정책에 대한 고찰
- 둘째, 식품안전 규제정책에 대한 고찰
- 셋째, 식품안전 규제 정책의 연대별 변화 추이 분석
- 넷째, 외국의 식품규제정책에 대한 사안별 고찰
- 다섯째, 식품안전관리 합리화를 위한 정책 제언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가. 규제정책에 대한 이론적 고찰

규제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규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하여 규제의 특성, 성격 등을 파악하였다.

나. 우리나라 규제정책 성과에 대한 고찰

식품안전규제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 우선 우리나라 규제정책 전반에 대한 성과와 특징 및 외국의 규제정책 동향을 고찰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다. 식품안전규제 정책에 대한 고찰

식품안전 분야 규제정책 개선에 대해 특징과 한계 등을 고찰하여 향후 개선방향 도출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라. 연대별 식품안전규제 개선에 대한 분석

1962년 식품위생법 제정이후 추진되었던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 내용을 10년 단위 연대별로 묶어 내용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식품안전 분야 규제정책 개선 흐름을 파악하였고, 향후 개선방향 도출에 참고자료가 되었다.

마. 현재 규제정책 개선에 대한 인식 파악

식품업체, 소비자를 대상으로 현재 우리나라 식품안전 규제정책에 대한 불만사항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2. 연구방법

가. 기존 자료 및 문헌고찰

규제개혁위원회 등의 연차보고서와 규제 전문가들의 규제정책에 대한 연구보고서 등 기존 자료 및 문헌을 고찰하였다. 특히 외국의 현황 파악에서 국제기구인 CODEX의 식품규제정책의 전환 방향 등에 대한 자료를 고찰하였다.

나. 식품안전규제 제개정 내용 정리 및 분석

1962년 식품위생법 제정이후 현재까지 추진되었던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회차별 개선 내용을 정리하였고, 연대별로 규제정책의 변화와 특징을 분석하였다.

다. 식품규제에 대한 인식 조사

식품업체와 일반인보다 식품정책에 대해 식견이 있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대상으로 현재 우리나라 규제정책 전반에 관한 불만정도를 조사하였다.

설문지는 5점 만점의 리커트 척도를 활용하여 만들어졌고, 주요 내용은 타 조사내용을 참고하여 총 14가지 불만사항을 수집, 개발하였다.

라. 외부 전문가 원고 위탁

보고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현재 규제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에게 우리나라 규제정책의 방향 등에 대해 원고 의뢰를 하였다.

3. 분석방법

식품업체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한 결과는 자료처리와 더불어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가. 통계분석

수집된 설문지는 Coding, Editing 등의 과정을 거쳐 SPSS 14.0 Version Program으로 전산처리하였으며, 모든 자료는 기본적인 특성에 따라 문항별로 조사결과 집계표를 제시하였다.

나. 조사결과의 유의성 검증

조사내용별 차이 확인 등 조사자료의 변수간 검증은 Chi-square test 와 Student's t-test를 이용하여 변수간, 집단간 유의성 여부를 검증하였다. p value는 0.01, 0.05%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다. 자료 처리

조사된 자료는 [그림 1-1]와 같은 절차를 거쳐 처리, 분석되었다.

[그림 1-1] 자료처리 과정







제2장 우리나라 규제개선 정책 현황

제1절 규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2절 우리나라 규제개선 추진체계와 성과

제3절 우리나라 규제정책 동향과 변화 추이

제4절 외국의 규제개선 동향



2

우리나라 규제개선 << 정책 현황

제1절 규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규제 유형과 정당성의 근거

가. 정의

규제의 개념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정의하고 있지만, 크게 보면 시장 메커니즘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의미하는 협의의 규제와 경제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정부의 개입활동 전체를 의미하는 광의의 규제로 나뉜다. OECD 및 선진 외국에서 규제개혁의 대상범위는 행정부가 정책목적을 위해 만드는 모든 법령·규정을 포함한다. 즉, 권리침해 사항에 한정되지 않고,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것으로 보조금 지급정책, 가이드라인, 업계 자율협약이 포함된다.

우리나라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규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즉 규제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

- ① 정부와 국민의 관계가 아닌 정부와 공기업 및 행정기관 내부를 규제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으며,
- ② 권리를 제약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에 대한 예산지원이나 기구설립 등은 해당되지 않고,

- ③ 법규 형태를 가져야 하므로 계약, 계획, 내부기준 및 가이드라인 등은 규제로 보지 않는다.

나. 성격

규제는 일반적으로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로 나누는데(최병선, 2006), OECD와 우리 정부는 행정적 규제를 추가하여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1) 경제적 규제

경제적 규제는 기업의 본원적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로서, 크게 ① 진입 규제 ② 가격 및 이윤에 대한 규제 ③ 품질, 생산량, 공급대상, 공급조건 및 방법에 대한 규제 등이 있다. 진입규제의 예로는 영업 인허가, 수입규제가 해당된다.

2) 사회적 규제

사회적 규제는 개인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제하기 위한 규제로서 환경보호, 근로자의 보건 및 안전, 식품안전 등 소비자 건강, 사회적 차별 대우 금지, 약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규제 등이다. 행정적 규제는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각종 서류, 보고 의무, 규제위반시의 제재, 감독을 받을 의무 등을 말하며 경제적·사회적 규제의 집행을 위해 보충적으로 부과하는 규제이다.

3) 행정적 규제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행정규제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으로 정의하고 있다.

다. 정당성

규제의 정당성의 근거는 대개 시장기능의 실패에서 찾고 있다. 시장의 가격기능에 맡겨서는 자원의 효율적 분배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영역이 있고, 사회적 형평을 해치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해치는 사례로는 국방·치안과 같은 공공서비스 공급, 공해물질의 외부효과 통제, 독과점 산업에서 재화와 용역의 과소생산,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비효율성 등이 이에 해당된다. 기타 사회적 정의와 관련된 사항으로 경제적 약자에게 불리한 계약, 사회 안전에 심각한 침해 방지 등이 있다.

2. 규제개선의 필요성

규제는 예산, 행정조직과 함께 정부의 3대 정책수단 중의 하나이다. 특히 예산과 규제는 ‘당근과 채찍’의 기능을 하며, 상호 대체하거나 보완적으로 사용된다. 특정 분야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는 것과 나머지 분야는 금지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효과는 동일하기 때문이다. 공무원들은 정부 예산을 확보하지 않아도 정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정책을 적극 활용하려는 경향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정부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은 나라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규제가 중첩적으로 도입되고, '규제만능주의'에 빠질 위험이 상존한다. 큰 사회적 사건·사고가 터지고 나서 정부가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규제강화 방안이 무더기로 등장하는 이유이다. 그러나 규제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 개인과 기업은 규제를 준수하기 위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정부는 규제 집행하고 및 감시하기 위한 행정력이 소요된다. 때문에 규제를 감추어진 조세(Hidden tax)라고 한다.

더욱이 규제는 한 번 만들어지게 되면,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무척 어렵기 때문에 처음 만들 때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규제가 생기면 이로 인해 이익을 얻는 측과 손해를 입는 측, 즉 이해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를 변경하기 어렵게 된다.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규제를 만드는 과정이 오래 걸리고,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빨리빨리' 행정문화로 인하여, 선진국에 비하여 입법예고 기간도 짧고 깊이 검토하지 않고 규제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 결과 빈번하게 법령이 개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규제를 제정하고 집행하는 공무원들에 대하여 규제의 효과, 관리방법에 대하여 체계적 교육도 부족하고, 이해집단들의 강한 이익주장으로 인하여 정부의 규제정책 추진이 지연되고 왜곡되기도 한다.

잘 만들어진 규제의 경우에도 시간이 지나 환경이 변화하면 시대에 맞지 않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규제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하게 된 규제는 폐지하고 현실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 실제로 각 부처는 매년 법령 개정을 통하여 소관 규제를 손질하고 있다. 부분적 규제개선은 부처 스스로 힘으로도 가능하나, 규제의 획기적 변혁은 어렵다. 외부로부터의 추진동력이 필요하다. 다수 부처가 관

련된 사항은 개별부처 차원에서는 해결이 되지 않으며, 또한 자기부처 소관 규제라 하더라도 관료사회의 관행상 규제를 도입한 사람들이 현직에 있는 동안에는 후배들이 손을 대기 어렵다. 또한 규제자체가 정치사회적 타협의 결과물이며 규제로 인한 수혜자들에 의한 ‘규제기관의 포획’이 일어나기 때문에 한번 생긴 규제는 쉽사리 바뀌지 않으며 현행 규제의 틀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저항이 만만찮은 것이다. 이러한 이해집단들의 조직적 저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의 정치적 추진동력이 필수적이다.

제2절 우리나라 규제개선 추진체계와 성과

1. 역대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배경

우리나라 규제개혁은 경제위기 극복과 국가선진화 전략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초창기에는 국가주도 경제를 민간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일이 중심이었으나,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기업환경을 개선하여 외국인 투자를 끌어오는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가. 1960~70년대

60~70년대 경제개발시대에는 산업을 보호하고 각종 자원배분에 국가가 광범위하게 개입하는 등 규제가 일반화된 시기였다. 규제방식도 명시적 법령 뿐 아니라 행정지도, 내부지침, 관행 등 법적 근거 없이도 행해졌다.

나. 1980년대

1980년대 들어와 정부주도 경제성장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축소하고 공기업 민영화 등 민간주도 경제로 전환하는 정책이 추진되었다. 또한 우리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시장 개방 및 제도 투명화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였다.

김영삼 정부는 행정쇄신위원회를 설치하여 부패방지, 행정내부 개혁을 포함한 규제개혁 노력을 하였고, OECD 가입 협상과정에서 우리나라 전체 제도에 대하여 점검을 받고 국제기준에 맞추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다. 1990년대~2000년대 초(김대중 정부)

획기적인 규제개혁 성과를 거둔 것은 김대중 정부였다.

1997년 IMF 금융위기를 맞아 우리경제의 운영방식에 대하여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하면서 규제에 대해서도 획기적인 개혁이 시작되었다. 특히, 김영삼 정부 말기에 제정된 행정규제기본법과 이에 근거한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강력한 개혁드라이브를 걸었다. 강력한 규제감축 분위기 속에서 전체 규제수가 1/2로 줄어들었고, 새로 증가하는 규제수는 미미하였다.

라. 2000년대 중반(노무현 정부)

뒤를 이은 노무현 정부는 덩어리 규제개혁을 통하여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경제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민간기업과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는 민관합동 규제개혁기획단을 설치하여 여러 부처에 관련된 복합규제나 앞뒤 단계에 존재하는 규제를 포함한 덩어리 규제에 대한 개

혁을 추진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규제개혁 추진역량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 자문기구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였다. 신설 규제에 대한 심사는 기존 규제개혁위원회에 맡기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기존규제 개혁에 대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2. 규제 등록기준의 변화

규제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부처의 법령상 미등록규제에 대한 일괄 정비작업이 2009년 실시되었다. 내용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규제들을 하나의 단위로 통합 등록하던 기존의 기준을 바꿔, 주된 규제와 부수적 규제로 분리하여 규제등록의 사각지대를 없앴으며 2,276건의 미등록규제를 발굴하여 등록하였다. 부수규제란 주된 규제로부터 파생되는 것으로 내용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규제로, 주된 규제를 부과하기 위한 사전절차적 규제와 주된 규제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사후보완적 규제로서 주된 규제의 일부분이 되는 규제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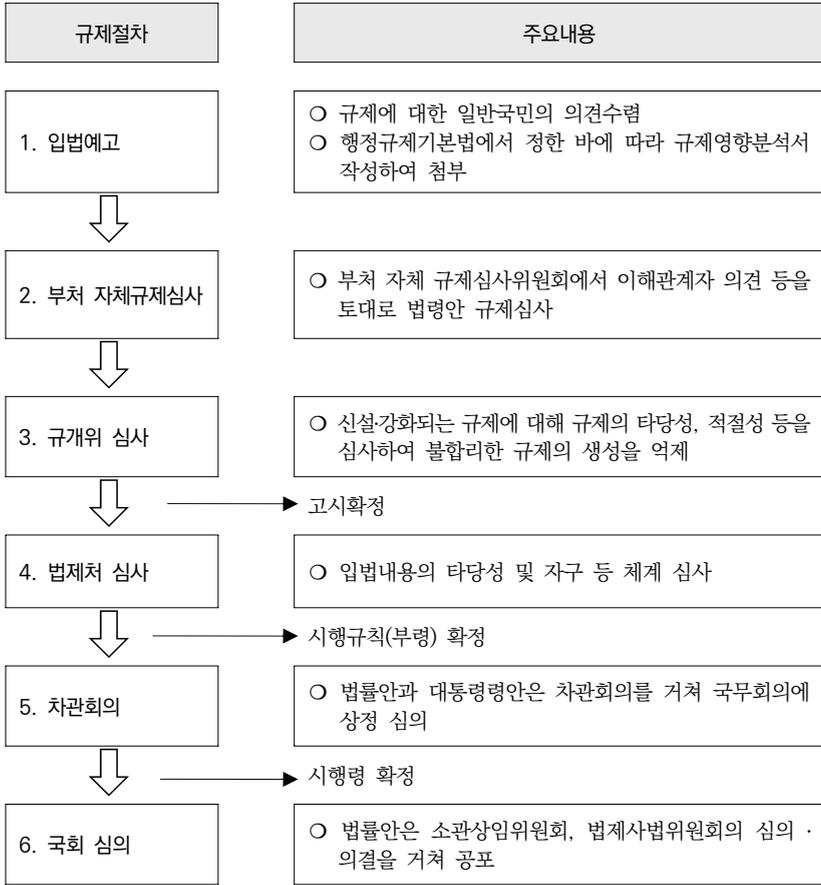
3. 규제개혁 추진체계

가. 규제도입

[그림 2-1]에는 정부가 규제를 도입하기 위해 거치는 절차가 그림으로 도식되어 있다.

28 식품분야 규제정책의 변화와 향후 식품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그림 2-1] 규제도입 관련 정부입법 절차



나. 신설, 강화 규제심사

우리나라 규제개혁의 두 축은 규제가 증가하지 않도록 새로 생기는 규제를 엄격히 관리하는 일과 기존규제에 대한 지속적 정비이다. 우선 신설 규제에 대한 관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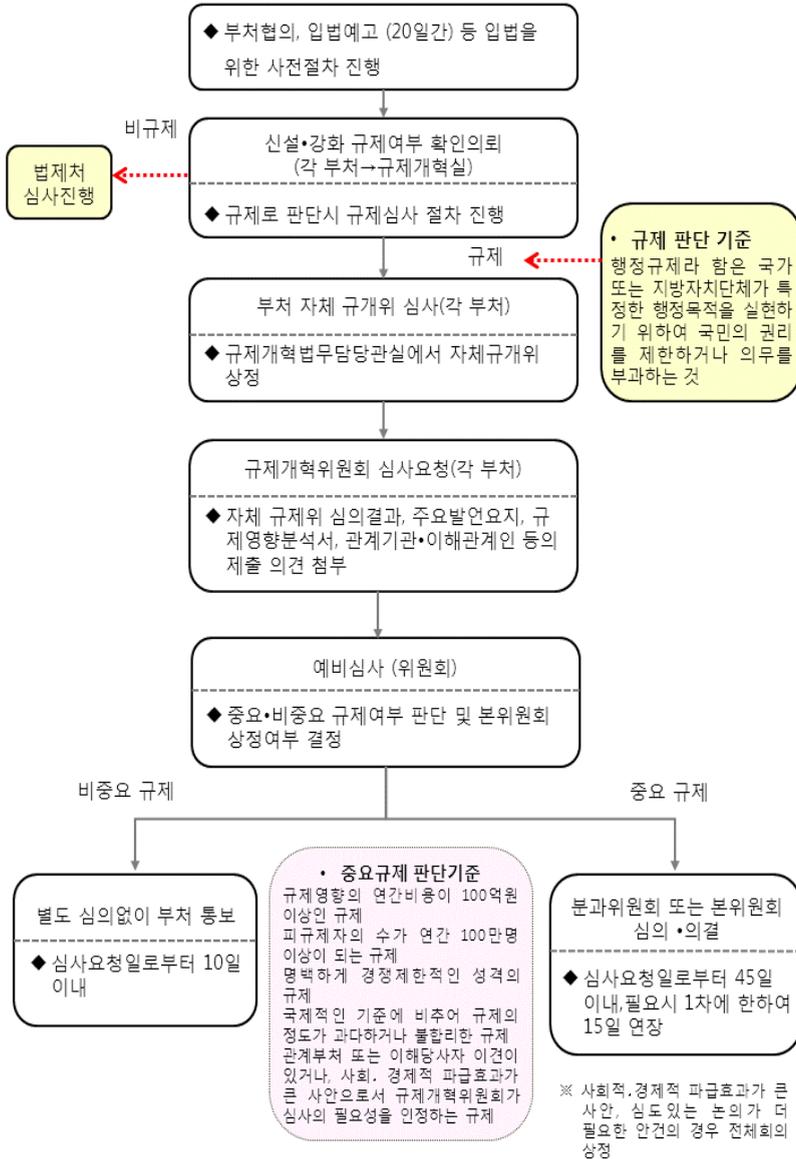
규제를 만드는 과정은 이미 확정된 정책내용을 법규에 구체화하는 사후적 조치이면서도, 별도의 중요한 정책검토 과정이다. 여타 법규와의 충돌 여부, 형평성 문제, 중복 규제 여부 등을 검토하고, 규제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하위규정이 상위규정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지 점검하게 된다.

종전에는 각 부처에서 규제를 만들고 법제처 심사만으로 정부안이 확정되었다. 고시 이하의 하위 법령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에 완전히

맡기고 법제처 심사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는 신설규제에 대한 외부통제기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중앙정부 각 부처가 규제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자체적으로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입법예고를 할 때 법규 개정안과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규제영향분석은 규제의 필요성과 적절성을 분석하는 것인데 부처들이 규제안 마련시 다양한 대안을 고려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과 함께 국민들에게 공표함으로써 각 부처의 분석내용에 대해서 외부로부터 검증을 받도록 한 것이다.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부처 자체 규제심사위원회를 거쳐 중앙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된다. 위원회는 정부위원(1급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지만 민간위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불필요한 규제의 신설을 최대한 억제하고 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충실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30 식품분야 규제정책의 변화와 향후 식품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그림 2-2] 신설·강화규제 심사 흐름도



위원회는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규제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명백히 불합리한 내용의 규제는 중요규제로 선정하여 직접 회의에 상정하여 토의한다. 격주 단위로 본회의와 분과위원회가 개최되는데 부처 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토의를 통하여 규제내용에 대하여 동의할 것인지 심사한다. 불합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에 개선 또는 철회를 권고하는데 권고이면서도 사실상의 강제력을 가지고 있다. 부처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권고내용을 수용하여야 하며, 절차적으로도 법제처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결과서를 첨부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규제개혁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실에 규제조정실을 두고 각 부처와 사전 실무협의 및 안전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의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심사결과 38개 중앙부처 전체적으로 연간 약 1200건의 규제를 개정하거나 신설하려고 하는데, 그중 약 20%가 중요규제로 분류되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는다. 그중 약 50%에 대하여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하도록 권고하였다.

〈표 2-1〉 '08~'12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실적

회의개최(횟수)	심사규제 수	중요규제 수	개선·철회 권고 건수	개선·철회 권고율(%)
본회의 109 분과위 222	5,898	1,184	634	53.5

신설규제에 대한 심사기준도 계속 보완되고 있다. 규제의 적정성 판단이 주관적으로 되지 않도록 B/C 분석시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도 최대한 계량화하도록 하였고, 종전에는 하지 않던 중소기업영향평가, 규제형평성 등을 검토기준에 추가하였다.

다. 기존규제의 정비

기존규제에 대한 지속적 정비는 매우 중요한 규제개혁 분야이다. 연도별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규제에 대한 규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특정분야를 정하여 기획성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매년 중점 개선해야 할 분야를 정하여 각 부처에 정비지침을 시달한다. 각 부처는 이 지침에 따라 소관분야의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하게 된다. 위원회는 이를 종합하여 정부전체의 규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확정한다. 각 부처는 확정된 규제정비계획을 실행하고, 연말에 부처별 평가를 실시한다.

이러한 정기적 규제정비 이외에 특히 문제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연중 수시로 기획과제 형태로 규제개혁을 하고 있다. 부처 자체적으로도 추진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개 국무총리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등 외부기관 주도로 개혁이 추진된다. 여러 부처가 관련되었거나, 이익집단의 반발 때문에 부처 자발적으로 개혁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일반 국민 및 경제단체 건의를 통해 문제과제를 발굴하고, 소관부처와 협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하고, 관계장관회의 또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4. 규제개혁을 위한 제도적 장치

신설규제와 기존규제정비와 같이 개별 규제를 개선하는 작업과 함께, 규제방식의 변경 및 규제개혁 시스템 자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 왔다.

가. 한시적 규제유예

한시적 규제유예는 규제를 당장 폐지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일정 시기 동안에만 규제적용을 면제하여 부담을 낮추어 주려는 제도이다.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를 맞아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기업활동과 관련한 규제에 대해서 적용되었다. 예컨대 녹지 의무조성 비율 완화, 수도권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제한 완화 등이다. 규제 유예기간 동안 별다른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은 규제의 경우는 영구히 완화하기로 하였다.

나. 중소기업 규제형평제

규제 순응비용이 동일하더라도,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규제부담을 크게 느끼게 된다. 따라서 규제적용에 있어서 부담능력의 차이가 고려될 수 있도록 규제를 설계하려는 것이다. 신설 규제 심사에 있어서나 기존규제의 정비에 있어서 일반원칙으로 정하였다. 규제 적용시기, 제재수준, 규제집행절차 등에 적용될 수 있는데, 예컨대 중소기업에는 규제적용시기의 유예기간을 길게 설정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때 정액이 아니라 기업매출의 일정비율로 정하는 것 등이다.

다. 규제방식의 네거티브화

포지티브 방식은 법규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금지하는 방식이다. 반면 네거티브 규제방식은 법규에 정한 행위를 제외하고는 어떤 행위라도 허용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네거티브 방식이 보다 혁신에 우호적인 규제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신기술이나 신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규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도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전환을 시도하였으나, 추진기간이

짧고 부처의 소극적 태도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번 박근혜 정부는 기업 활동과 관련된 규제 전체에 대하여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를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성질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이 곤란한 사항은 실질적인 규제완화 효과가 나타나도록 규제를 개혁할 계획이다.

라. 재검토행 일몰제(sunset clause)

행정규제기본법에서 모든 신설규제는 원칙적으로 5년 이내의 일몰기간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일몰제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여 신설규제에 대한 일몰설정 건수는 극히 미미했다. 일몰제 자체가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문제가 있고, 향후 동 규제가 불필요해질 시기를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현행 규제에 대해서는 일몰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09년에 신설규제와 현행 규제 모두에 적용될 수 있는 재검토행 일몰제를 도입하였다. 기존 일몰제는 일몰기한이 도래하면 법규가 자동적으로 폐지되고 효력이 상실되는 것인데 반하여, 재검토행 일몰제는 일몰기간이 도래하면 규제내용을 재검토행해서 규제를 폐지시킬 것인지, 계속 존속시킬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한 것이다. 2009~2010년 중 전부처 규제 전체를 검토하여 약 2천여 건에 대하여 3~5년의 재검토행 일몰기간을 설정하였다. 매년 약 600건의 규제가 일몰기간이 도래하여 재검토행 심사를 받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는 규제심사 인력 부족으로 재검토행 규제과제에 대한 제로베이스 수준의 심도 있는 검토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2009년에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과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을 마련하였다. 앞으로 새로 신설되는 모든 행정규칙에 대해 3년 또는 5년의 효력상실형 혹은 재검토행 일몰을 설정하도록 의무화하고, 법제처로 하여금 이를 관리하도록 하였다.

마. 규제 이력관리

규제의 이력관리를 위하여 규제등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모든 법령에 있는 규제를 조문단위로 상위법령 근거를 포함하여 해당 규제내용이 체계적으로 등록되어 있다. 이러한 규제정보는 온라인시스템에 등록하여 국민 일반에게 공개하게 되는데, 국민들에게 규제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규제개혁 추진에 활용하고 있다. 규제개선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상위법에 근거없는 규제가 생겨나지 않도록 관리하려는 것이다. 또한 규제 이력을 관리함으로써 과거에 폐지된 불합리한 규제가 부활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역할도 한다. 그간 중앙부처의 규제에 대해서만 통합하여 관리하였으나, 금년에는 중앙과 지자체의 규제를 연동시킨 통합관리시스템을 개통하였다. 중앙부처의 규제법령이 개선된 이후, 이를 반영하여 관련 지자체 조례와 규칙이 적기에 개선되는지를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규제등록 및 국민공개제도는 외국에는 없는 우리나라에 독특한 제도이다. 다만, 규제등록 임무가 각 부처에 맡겨져 있다 보니, 미등록된 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규제도 상당수 있다. 이 때문에 규제개혁위원회 차원에서 미등록 규제 발굴을 위한 전수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조문 단위로 규제수를 집계함에 따라 규제수는 정부의 개혁성과에 대한 비판의 예시로 활용되기도 한다.

바. 기술영향평가제도

2013년부터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심사를 할 때 기술영향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 기술영향평가는 법령으로 표준 또는 인증기준을 새로 만들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기존의 여타 표준·기준과 중복되는 사항인

지, 업계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게 되는지 여부 등을 평가하려는 것이다. 종전에 제품과 생산방법·시험방법에 대한 표준·인증기준 등은 전문 기술적 사항이어서 규제심사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또는 기업체가 선택적으로 참여여부를 정하는 것이어서 규제심사 대상으로 다루지 않았다. 그러나 유사한 기술인증 및 표준이 남설됨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중소기업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어 규제심사시 기술기준에 대해서도 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이를 위하여 현재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 T/F를 설치하고 각 부처에서 만드는 각종 표준·인증제도를 분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는 범정부 기술기준 DB를 구축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제3절 우리나라 규제정책 동향과 변화 추이

1. 규제 등록 현황

규제사무 등록기준에 따라 전 중앙행정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행정규제 사무를 등록하고 있으며, 규제 등록건수는 <표 2-2>에 제시된 바와 같이 규제등록 첫 해인 1998년 8월 총 10,717건으로 시작하였다. 이후 지속적인 규제개혁에 따른 성과로 2008년 말에는 총 5,186건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후 지속적인 규제개혁에 따른 성과로 2008년 말에는 총 5,186건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2009년 규제등록 기준의 변화로 등록건수가 증가하여 2013년 현재 총 14,177건(주규제 7,182건 + 부수규제)이 등록되어 있다.

〈표 2-2〉 등록규제 현황

년도	98	99	02	04	06	07	08	09	10	11
총계	10,185	7,128	7,724	7,846	8,084	5,114(1)	5,186	6,740(2)	7,055(2)	6,952

주: 1) '07.2월 규제등록방식 변경(개별행위단위 등록 → 사업단위 등록)으로 등록규제 수 급감
 2) '09~'10년 법령상 미등록규제 발굴·등록(2,276개)으로 등록규제 수 증가

2. 규제 성격별 현황

2011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규제의 성격별 현황은 〈표 2-3〉에 제시된 바와 같다.

경제규제가 2,695건으로 2,302건의 사회규제보다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규제를 구성하는 주된 분야별 규제 건수를 살펴보면 소비자 안전이 1,08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식품안전규제도 이 분야에 포함될 수 있다.

〈표 2-3〉 우리나라 규제성격별 현황

	총건수	세부내용	비고
경제규제	2,695	진입 1,062, 가격 125, 거래 951, 품질 557	
사회규제	2,302	환경 596, 산업재해 206, 소비자 안전 1,085, 사회적 차별 415	
행정규제	1,955	각 행정기관 보고 의무	

38 식품분야 규제정책의 변화와 향후 식품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표 2-4〉에는 규제 개선을 위해 법령심사를 하는 위원회 개최현황이 제시되어 있다. 위원회 개최회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법령 심사 건수가 많다는 것으로 규제개선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4〉 법령 심사 위원회 개최 현황

	위원회 개최 실적(회)			심사법령 수	심사규제 수
	분과위	본위원회	소계		
2010년	51	27	78회	464	1,054
2011년	43	25	68회	523	1,248

주: 예비심사 주 2회 개최, 매 평균 검토안건 수 : 6개 법령(규제수 14.7건)

〈표 2-5〉에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규제 심사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규제심사건수는 2011년에 비해 2012년에 증가하고 있으나 중요규제 비율이나 개선 및 철회권고건수는 미미하나마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 중요규제 및 개선·철회권고 현황

	규제심사(건)	중요규제(건) (중요규제비율, %)	개선·철회권고(건) (개선·철회 권고율, %)
2010년	1,054	325 (30.8%)	157 (48.3)
2011년	1,248	251 (20.1%)	127 (50.6%)

3. 규제등록 변동 추이

규제등록의 최근 5년간 변동추이는 〈표 2-6〉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2-6〉 우리나라 규제등록 변동 추이

연도	2008. 2	2008.12	2009.12	2010.12	2011.12	2012.12	2013. 현재
등록규제 건수	5,427	5,186	11,050	12,120	13,147	13,914	14,177

주: 2009년에 규제등록 기준이 변경되어 2009년과 2008년 규제 수 비교는 의미가 없음
 자료: 국무총리실 홈페이지, <http://rrc.go.kr>

규제등록의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2008년에서 2009년 급증하였다가 그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8년에서 2009년 사이 등록이 증가한 원인으로는 크게 규제 등록기준 변경과 미등록 규제 발굴 및 등록으로 볼 수 있다. 2008년까지는 내용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규제를 크게 묶어 하나의 사업단위로 등록하였으나, 국민들이 규제 세부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세부내용별로 나누어 주규제와 부수규제로 나누어 등록함에 따라 외형상의 등록규제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따라서 2008년과 2009년의 규제수 비교는 의미가 없다. 또한 2009년~2010년에는 등록되지 않은 규제를 대대적으로 발굴하였는데 이는 법령상 규제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등록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규제가 상당수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 규제 증가와는 상관없이 등록규제 건수 자체가 증가하였다. 그 이후에는 주로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시장질서 확립필요성과 식품안전, 소비자보호, 안전강화, 환경보호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규제가 생성되었다.

제4절 외국의 규제개혁 동향³⁾

외국에서는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1980년대부터 규제개혁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특히 영국, 미국, 호주는 범정부적 규제관리체계와 법제를 갖추고 있다. 반면 독일은 주로 행정입법 절차를 개선하는데 포커스를 두고 있다. 규제개혁에 대한 국제간 협력은 OECD 경쟁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규제영향분석제도 개발, 국가간 규제개혁 성과 비교 등이 논의되고 있다.

1. 미국

미국은 1980년부터 지속적으로 규제개혁 관련 법제를 보완 발전시켜 왔으며 OECD 국가 중에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규제개혁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1980년 문서감축법을 제정하여 국민과 지방정부가 연방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제출 및 보고의무 부담을 완화하였다. 대통령실 연방관리에산처(OMB) 산하 정보규제실(OIRA)은 독립제 행정기관으로서 모든 정보제공 및 서류제출 요구를 3년 단위로 평가,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1981년 규제영향분석제도가 도입되었고, 1993년에는 모든 행정규제의 제·개정과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한 일반법 성격을 가진 대통령 ‘행정명령 12866’이 발령되었다. 1996년에는 중소기업규제완화촉진법을 제정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신설규제의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각 부처는 매년 규제변경 계획을 OIRA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규제안건은 연방관보에 공고되어 6개월간의 이해관계인 의견

3) 규제개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2012, 강은봉) 참조

수렴 절차를 거친다. 연간 1억달러 이상의 비용이나 편익을 발생시키는 중요규제는 관보에 입법예고하기 전에 OIRA의 사전심사를 받는데 규제영향분석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환경청과 직업안전·보건청이 규제안은 제출할 때에는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검토 결과를 추가로 첨부해야 한다. 연방부처는 입법예고 단계에서 제출된 국민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규제안을 작성하여 OIRA에 다시 제출하여 심사를 받게 된다. OIRA는 규제내용보다는 규제절차를 준수하였는지 규제영향분석이 충실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심사하고 미흡한 경우 반려시켜 재검토하도록 요구한다. OIRA의 최종심사를 통과한 규제안은 연방의회에 제출되고, 연방관보에 공포된다. 의회는 30일내 혹은 중요규제의 경우 60일내에 규제안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 비중요규제의 경우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할 필요도 없고, OIRA의 심사를 받지 않는다.

2. 영국

영국은 70년대 노동당정부의 국유화정책의 실패와 정부규제의 폐해에 대한 반성에서 1980년대에 대처 행정부에서 규제개혁이 시작되었다. 보수당 정부는 급진적 자유주의 이념에 기초하여 공기업 민영화, 1994년 규제완화 도급계약법 제정 등 강력한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1999년에 규제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되었고 2001년에 규제개혁법이 제정되었다⁴⁾. 각 부처의 규제개혁 총괄은 우리나라의 산업통산자원부에 해당되는 기업·규제개혁부의 선진규제처(BRE)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BRE는 그간 소속이 고용부, 통산산업부, 총리실 내각사무처로 수차례 변경되었지만 준 독립기관의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 각 부처가 규제기관을 신설하려면

4) 2006년 입법·규제개혁법으로 통합됨

반드시 BRE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규제정책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규제안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자문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주요 각료로 구성된 규제감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영국의 규제통제 시스템은 행정부와 의회 모두 규제개혁에 대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행정부는 법률에 정해진 규제라고 하더라도 해당 법률 조항을 개정하지 않고 장관이 발령하는 행정입법을 통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입법계획 초안은 의회에 제출되어 승인 등의 심사절차를 받게 되며 하원 규제개혁위원회가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의원 우회입법을 통한 규제 증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사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통제도 상시적으로 작동되고 있다. 대부분의 행정입법은 규제 영향분석서 및 입법취지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치게 된다. 영국의 규제영향평가제도에서는 규제의 비용편익 뿐 아니라 지역영향, 중소기업 영향 등 각종 영향을 통합한 영향평가제도로 발전하였다.

〈표 2-7〉 한국, 미국, 영국의 규제개혁 법제 비교

구 분	한국	미국	영국	
법 제 도	근거법	행정규제기본법	행정절차법 대통령명령12866 규제유연화법 문서업무감축법	입법·규제개혁법(LRRA 2006) 법령문서법(SI Act 1946)
	적용기관	모든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감사원 제외)	모든 연방행정기관 (워싱턴 DC, 국영기업 제외)	모든 행정기관 지방정부
	적용범위	정부제출법안 행정입법	행정입법(행정부 법안제출권 없음)	기존법률, 행정입법 정부제출법안 행정입법안 의원입법안(권장)
	적용제외 사무	안보, 형사, 행정, 조세 (세목, 세율, 부과징수)	외교, 국방	예외없음(단, 행정부는 조세 신설, 변경, 형사 죄목 신설, 압수, 수색, 구금, 조사등 권한신설 불가)
기구	정책기구 집행기관	규제개혁위원회 (대통령소속 민관합동기구, 총리실이 직무보좌)	대통령규제정책자문그룹 (의장:부통령) OMB/OIRA(대통령소속 행정기관)	규제정책위원회 위헌·규제 자문위원회의 BRE(독립행정기관)
의 회 통 제	기관	각 상임위원회	양원 각 상임위원회 상원행정위원회 하원감독·정부개혁위원회 (규제소위) 연방감사원(GAO)	양원 본회의 양원합동 행정입법위 하원행정입법위 하원 규제개혁위
	수단	사후제출 해명요구	사전협의·사후제출·효 력유보(30~60일) 무효화(양원합동결의)	사전제출-승인권 사후제출-거부권(40일내)

자료: 강은봉(2012), 규제개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제3장 식품분야 규제개선 동향 및 관리방향

제1절 식품규제 현황 및 특성

제2절 식품분야 규제개혁 추진 현황

제3절 식품안전 분야의 규제개선 방향



3

식품분야 규제개선 동향 << 및 관리 방향

제1절 식품규제 현황 및 특성

1. 식품산업 현황

가. 식품산업 시장 현황

식품산업은 국민경제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로 <표 3-1>에 제시된 것처럼 2012년 식품산업 규모는 131조원으로 GDP 대비 10.6%를 차지한다.

<표 3-1> 식품산업 규모

년도	시장규모(10억원)			종사자수(천명)		
	전 체	음식료품 제조업 ¹⁾	음식점업 ²⁾	전 체	음식료품 제조업 ¹⁾	음식점업 ²⁾
1999	66 579	33 320	33 259	1 487	154	1 332
2000	69 543	34 071	35 472	1 588	158	1 430
2009	130 636	60 771	69 865	1 767	166	1 600
2010	131 290	63 725	67 565	1 780	171	1 609

자료 : 1) 통계청 제조업 통계조사(종사자수 10인 이상 사업체 대상)

2) 통계청 도소매업 통계조사

또한 원료생산, 가공, 유통, 판매 각 단계마다 수많은 사업자들이 있고, 국가전체 고용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농어민 306만명 외에 음식점만 계산하더라도 '12년 기준 66만개 업소에 약 180만명⁵⁾이 종사

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이 통합되어 치열한 경쟁속에서 신원료, 신제품이 개발되는 등 끊임없는 기술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식품안전규제는 이러한 산업계의 기술혁신 노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국민의 안전을 도모해야 하는 이중의 과제를 안고 있다. 신제품, 신원료 등 혁신적인 상품이 시장에 신속하게 진출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인허가 체계를 갖추어야 하고, 영세 서민들이 경영하는 업소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손쉽게 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규제준수 부담을 줄여주고 규제를 명확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역량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나. 식품수입 현황

〈표 3-2〉에는 식품수입현황이 제시되어 있다.

〈표 3-2〉 식품류 수입현황(톤)

	1997년(A)	2012년(B)	증가율(B/A)
어류	414	1,119	270%
육류	289	819	283
설탕류	2,196	2,743	125
한약재대두	2,231	2,874	129
음료·주류	228	433	190
과일	245	840	343
채소	706	1,288	182
조제사료	2,999	6,036	201
낙농품	74	184	249
곡물	11,832	14,245	120

자료 :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발췌, 2013.

5) '12년 통계청 잠정추계(내부자료)

1997년 대비 2012년 수입량 증가는 작제는 곡물류 120% 포인트, 설 탕류 125% 포인트 증가하였고, 많게는 과일류는 343% 포인트, 육류 283%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전 세계 수많은 사업자로부터 식품류가 수입되고, 해외에서의 식품안전 이슈가 국내 식품 안전관리에 바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이를 관리할 행정력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해외에서 발생된 식품안전 사고에 대한 수입금지·리콜 등 대응조치를 취함에 있어서도 조치방법에 대해서 국제적 조화가 요구되고 국가간 통상분쟁의 단골 주제이기도 하다. 또한 규제내용이 전문적·기술적 사항이 많아 행정규칙(고시) 형태의 규제가 많고 규제심사 등을 통한 외부통제도 어려운 실정이다.

2. 식품규제 현황 및 특성

식품분야는 규제가 가장 강한 분야의 하나이다. 원료, 시설, 제조공정, 제품, 영업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게다가 규제가 점점 강화되고 복잡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식품의 원재료와 가짓수가 무수히 많을 뿐 아니라, 개별 식품별로 원료 생산, 수입, 가공, 유통, 판매 등 각 단계마다 관리해야 할 위해요인이 무수히 많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수입 식품류의 양과 종류가 크게 증가하면서 외국에서의 식품안전 사고가 바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민 소득수준이 증가하면서 식품 안전에 대한 의식수준이 매우 높아졌을 뿐 아니라, 과거에는 몰랐던 새로운 위험물질이 발견되고 사회 문제화 될 때마다 안전관리 규제가 대폭 도입되곤 했다. 게다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더라도 예방적 차원에서 국민들의 정서적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을 정도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가. 관련 법령 현황

현재 식품안전과 관련된 법령은 <표 3-3>에 제시된 바와 같다.

식품안전기본법에서 6개 부처 소관 27개⁶⁾법률이 열거되어 있는데, 그 속에 500여개 이상의 규제가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대부분 사회적 규제에 해당된다.

주요한 규제분야는 영업 인허가에서 원료사용, 제조시설 및 전문인력 고용 등 제품 생산, 표시·광고 제한 및 유통기한, 유해제품 회수·폐기, 품질 및 안전성 검사 및 보고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특히 식품안전 규제의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5개의 규제를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농축산식품부에서 186개 규제를 가지고 있다.

규제의 개수만으로는 식품안전 규제가 강하지 않다고 잘못 오인될 수 있다. 그러나 식품규제의 규제는 동일한 1개의 규제라고 하더라도 여타 분야 규제와 비교해서 훨씬 상세하고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 규제의 강도가 크다는 것이다.

6)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전염병예방법, 국민건강증진법, 식품산업진흥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축산법, 사료관리법, 농약관리법, 약사법, 비료관리법, 인삼산업법, 양곡관리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학교급식법, 학교보건법, 수도법, 먹는물관리법, 소금산업 진흥법, 주세법, 대외무역법, 산업표준화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표 3-3〉 법령별 식품안전 규제 현황(2013.6월말 기준)

(단위: 건)

	소관부처	등록규제수
계		507
식품안전기본법	식품의약품안전처	4
식품위생법	식품의약품안전처	114
건강기능식품관리법	식품의약품안전처	33
어린이식생활관리특별법	식품의약품안전처	25
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의약품안전처	49
국민건강증진법	보건복지부	2
약사법*	보건복지부	18
식품산업진흥법	농림축산식품부	49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농림축산식품부	18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관한법률	농림축산식품부	4
농약관리법	농림축산식품부	40
비료관리법	농림축산식품부	17
양곡관리법	농림축산식품부	7
인삼산업법	농림축산식품부	16
먹는물 관리법	농림축산식품부	35
수도법	환경부	31
주세법	국세청	16
염관리법	해양수산부	5
학교급식법	교육부	4
학교보건법	교육법	2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에관한법률	산업통상자원부	10
소금산업진흥법	해양수산부	8

* 동물용 의약품 관련 규정에 한정

나. 부처별 규제등록 현황

규제등록의 부처별 변동추이는 <표 3-4>에 제시된 바와 같다.

식품안전과 관련된 규제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을 포함하여 총 39개 중앙정부에서 규제를 등록하고 있다.

<표 3-4> 우리나라 규제등록 부처별 동향

부처명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현재
전체	5,186	11,050	12,120	13,147	13,914	14,164
경찰청	97	97	142	145	145	145
고용노동부	221	487	521	538	566	567
공정거래위원회	116	117	339	411	477	477
관세청	36	44	47	34	35	35
교육과학기술부	247	570	578	519	531	533
국가과학기술위원회	0	0	0	0	0	0
국가보훈처	16	38	97	102	101	101
국가인권위원회	0	0	0	0	0	0
국무총리실	0	0	4	4	4	4
국민권익위원회	2	1	1	4	4	4
국방부	9	32	32	28	32	32
국세청	9	9	9	14	14	14
국토해양부	929	2589	2541	2818	3061	3076
금융감독원			0	8	32	40
금융위원회	759	847	848	894	932	932
기상청	8	21	21	21	21	21
기획재정부	113	144	144	152	172	189
농림수산식품부	416	1161	1235	1418	1452	1462
농촌진흥청	5	11	11	14	14	14
문화재청	33	76	75	80	84	84

부처명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160	329	318	343	355	355
방송통신위원회	138	134	353	418	440	441
법무부	72	106	201	209	213	213
병무청	6	9	9	9	9	9
보건복지부	590	1240	1250	1247	1308	1309
산림청	67	280	280	292	344	344
소방방재청	108	326	410	520	531	531
식품의약품안전청	86	99	110	111	114	114
여성가족부	43	98	102	110	129	149
외교통상부	20	20	32	32	34	34
원자력안전위원회			0	88	88	88
중소기업청	35	131	132	143	145	145
지식경제부	295	1054	1076	1130	1134	1309
통계청	3	5	5	5	5	5
통일부	20	41	43	54	50	50
특허청	17	95	96	71	71	71
해양경찰청	37	64	64	71	79	79
행정안전부	146	169	379	396	401	401
환경부	327	606	615	694	787	787

주: 2009년 등록규제수가 크게 늘어난 이유는 2009년도 전부처 법령상 미등록규제 일제정비, 주된규제와 부수규제로 분리해 등록함에 따라 등록규제수 증가
 자료: 국무총리실 홈페이지, <http://rrc.go.kr>

보건복지부의 규제등록건수를 살펴보면, 2008년 590건에서 2009년 등록기준 재정비로 증가하여 1,240건이 되었고, 2013년 현재에는 총 1,309건의 규제가 등록되어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8년 86건의 규제가 2009년 9건으로 재정비되었으며 2010년 110건이 등록된 이후 2013년 현재 114건의 등록 건수를 유지하고 있다.

다. 식품안전 규제종류별 현황

식품안전을 주로 다루었던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등록규제 현황을 살펴보면 <표 3-5>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3-5>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 등록규제 현황

(단위: 건)

연도	분야	합계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2008	보건	590	71	401	118
	식품	86	0	86	0
	전체	5,186	2,308	1,877	1,001
2009	보건	1,240	84	725	431
	식품	99	0	99	0
	전체	11,050	3,799	3,476	3,775
2010	보건	1,250	82	736	432
	식품	110	0	110	0
	전체	12,120	4,225	3,696	4,199
2011	보건	1,247	83	730	434
	식품	111	0	107	4
	전체	13,147	4,483	4,134	4,530
2012	보건	1,308	85	767	456
	식품	114	0	108	6
	전체	13,914	4,671	4,387	4,853
2013	보건	1,309	86	767	456
	식품	114	0	108	6
	전체	14,175	4,778	4,432	4,965

주: 보건 : 보건복지부, 식품 : 식품의약품안전청
 자료: 국무총리실 홈페이지, <http://rrc.go.kr>

2013년 현재 등록된 규제내용 중 경제적 규제는 약 34%인 4,778건이며, 사회적 규제는 31%로 4432건, 행정규제는 35%인 4,965건이다.

보건복지부 규제 성격을 살펴보면, 전체 1,309건 중 약 59%인 797건이 사회적 규제에 해당되었으며 행정적 규제는 456건, 경제적 규제는 86건이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경우 전체 114건의 규제 중 대부분인 108건이 사회적 규제에 해당되었으며, 반면 행정적 규제는 6건에 불과하였으며 경제적 규제는 한건도 없었다.

〈표 3-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규제를 규제방식으로 분류하여보면, 95건이 투입, 7건 성과, 시장유인이 6건이었다. 규제영역으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108건이 소비자안전, 1건이 사회적 차별 규제로 분류되었다.

〈표 3-6〉 식품의약품안전청 등록규제 성격별 현황

(단위: 건)

연도	분야	합계	사회적 규제	규제방식			규제영역				행정적 규제
				투입	성과	시장 유인	환경	산업 재해	소비자 안전	사회적 차별	
2008	식품	86	86	86	0	0	0	0	85	1	0
	전체	5,186	1,877	1,725	62	90	456	186	910	325	1,001
2009	식품	99	99	97	1	1	0	0	98	1	0
	전체	11,050	3,476	3,127	183	166	854	464	1,556	602	3,775
2010	식품	110	110	107	1	2	0	0	109	1	0
	전체	12,120	3,696	3,274	205	216	878	490	1,684	643	4,199
2011	식품	111	107	97	4	6	0	0	106	1	4
	전체	13,147	4,134	3,535	246	353	968	497	1,993	676	4,530
2012	식품	114	108	95	7	6	0	0	107	1	6
	전체	13,914	4,387	3,675	303	409	1,074	494	2,096	723	4,853
2013	식품	114	108	95	7	6	0	0	107	1	6
	전체	14,175	4,432	3,688	314	430	1,075	495	2,131	731	4,965

자료: 국무총리실 홈페이지, <http://rrc.go.kr>

라. 부처별 식품규제 내용

〈표 3-7〉에는 부처별 식품관련 규제의 세부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규제의 세부내용은 품목별 고시의 형태로 식품공전 등에 정해져 있는데 시험방법, 성분 규격, 제품기준을 모두 포함한 전체 고시내용을 규제 1개로 등록된다. 예컨대 ‘유사명칭 사용금지’와, ‘식품의 규격고시’ 는 각기 규제 1개지만, 규제 부담수준은 전자보다 후자가 훨씬 높다는 것과 같다.

〈표 3-7〉 부처별 식품관련 세부 규제내용

소관	법령	진입/퇴출 규제	영업활동 규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기본법	-	생산판매금지, 회수의무, 생산·판매기록보관, 검사명령
	식품위생법	영업등록 및 변경, 영업신고대상, 집단급식소 설치신고, 즉석 제조판매업 신고, 수입 식품대행자 신고, 동업자조합 설립허가, 영업허가 취소, 우수업소지정, HACCP업소 지정·지정취소 기준, 폐업신고, 영업승계, 영업소 폐쇄 조치	식품첨가물기구용기포장 기준규격, 식품표시기준, 식품의 한시적 기준, 수입금지품목, 수입품 검사, 검사기관지정, 자가품질검사, 식품·영업소 안전성 평가, 위생점검기준, 영업자·제조·가공업자 준수사항, 표시광고심의, 업종별 시설기준, 교육명령, 교육기관 지정, 허가수수료, 유통기한설정, 보고의무 대상, 위해식품판매금지, 긴급회수, 폐기처분, 과태료·과징금 기준, 종업원 건강진단, 수입신고, 영양사·조리사의 자격·의무고용면허취소, 청소년 주류제공금지, 시설개수 명령, 기준규격 없는 물품 판매금지 등
	건강기능식품관리법	관련단체 설립인가, 제조업허가, 수입판매업 신고, 영업자 지위승계	업종별 시설기준, 의약품제조시설 사용기준, 제조기준, 원료 및 제품 기준규격, 자가품질검사의무, 수입신고검사, 기능성표시광고심의, 품질관리인 고용, 유사표시금지, 영업장 검사, 기준규격위반식품 판매금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집단급식소 등록관리	우수판매업소 지정, 고열량·저영양식품 지정고시, 정서저해식품 판매금지,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성분표시, 광고제한, 건강친화기업 지정, 급식지원센터 정보제공의무, 품질인증 기준, 식생활 안전·영양 평가

소관	법령	진입/퇴출 규제	영업활동 규제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	음주 경고 표시, 음주광고 제한
	약사법	동물약품 개설등록 신청, 동물약품 도매상 허가, 검정기관 지정	동물용의약품 제조시설기준, 안전사용기준, 수입품목허가, 사료첨가물 제조·판매 제한, 동물용 의약품 표시의무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법	우수인증기관 지정	유기가공식품 인증기준, 표시방법, 품질인증 대상품목 제한, 정기심사, 부정행위 금지, 전통식품 표준규격, 공장심사, 품질인증기관 보고의무, 인증심사원 자격, 관련문서 비치 및 보고, 인증식품 우선구매, 식품명인 자격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인증에 관한 법률	인증기관 지정 및 취소	부정행위 금지, 인증기관의 준수사항, 유기식품 등의 인증 및 취소
	인삼산업법	인삼류 제조업 신고	시설기준, 자체검사업체 지정 및 취소, 인삼류 검사, 미검사항품 거래제한, 품질인증기간
	농약관리법	제조·수입·판매업·원제업 등록, 농약방제업 신고	원제 등록, 농약품목 등록, 농약 표시기준, 불량농약 폐기명령, 허위과대광고 규제, 판매관리인 교육, 구매자정보 기록, 유통중 농약 검사, 수출입 승인, 수입신고, 유해농약 수입금지, 안전사용기준
	비료관리법	비료생산업 등록, 수입업 신고,	비료생산업 등록 시설기준, 비료품질 검사, 비료 공정규격 설정, 제조원료의 장부 기재, 비료공정규격, 수입제한
해양수산부	소금산업진흥법	소금제조업 허가	염 제조시설 기준, 염 품질검사 및 수수료, 검사기록 보관, 천일염 인증기관 지정취소
교육부	학교급식법	-	급식시설 시설기준, 급식 위탁운영기준, 위생안전 관리, 급식 전담직원 배치
	학교보건법	-	교사내 식품위생기준, 학교환경 식품위생 기준
환경부	수도법	일반수도사업 인가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안전기준,

마. 규제집행

식품규제의 강도가 타 규제보다 크지만 식품분야의 규제 집행단계는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식품안전규제는 대부분 일선 지자체에 의해 집행되고 있는데, 규제대상 식품의 종류와 사업체 수에 비해 공무원의 전문성이 낮고 인력도 매우 부족하다. 음식점만 해도 66만 개소인데, 식품위생직 공무원은 3천여명⁷⁾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피규제자들이 규제를 쉽게 준수할 수 있도록 규제에 대한 지도 컨설팅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규제식품안전 사고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일벌백계식 처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즉, 시장명령적 규제방식이 여전히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개선이 잘 되지 않는 실정이다.

제2절 식품분야 규제개혁 추진 현황

1998년 규제개혁위원회가 발족한 이래, 식품분야에서도 규제개혁 노력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국민들이 제기하는 민원을 반영한 개별적 규제개선 노력과 함께, 식품안전 정책의 기본원칙을 손대거나 특정 식품류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테마형 기획과제도 병행하였다. 몇 년에 한차례씩 식품분야에 대한 종합적 규제개혁이 추진되었는데 식품의 기준·규격부터 영업소 시설기준, 인력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효과표시 및 광고제한, 자가 품질검사제도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가 개선되었다.

그 중에서 특히 1999년과 2010년의 개혁이 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

7) 2013 안전행정통계연보: 중앙정부 452명, 지자체 약 2600명(추정)

된다. 규제개혁위원회 설립 초창기인 '99년에는 사회 전분야에 있어서 창의와 시장자율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과감한 개혁이 추진되었는데, 식품 안전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식품공전에 대하여 대대적인 개선을 하였고 향후에도 추진해야 할 식품분야 규제개혁의 큰 방향을 정하였다⁸⁾. 품질과 관련하여 완제품에 대한 품질기준만 남기고 제조 및 가공방법에 대한 규제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하였다. 또한 옷땀, 상황버섯 등을 원료로 허용하는 등 식품원료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되었으며, 식품원료에 대한 규제는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식품의 제조형태에 대해서도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민원인들의 신청에 의해 수시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변경하거나 신설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0년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 모든 규제에 대해서 대대적인 제도정비가 이루어졌는데 식품분야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업종별로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중 과도한 내용은 정비하여, 시설기준을 단순화하고 안전과 관련없는 시설기준은 삭제하여 시장진입비용을 낮추도록 하였다. HACCP 적용업체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자가품질검사제도를 개선하고, 영세업체에 대해서는 HACCP 의무적용을 면제하기로 하였다. 유통단계에서의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중복 조사를 개선하였다.

그러나 즉석가공식품류 규제, 자가품질검사 제도, 시설기준 등은 반복적으로 규제개혁 과제에 포함되고 있는데, 이는 아직도 식품분야 규제개혁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8) '99년도 규제개혁 백서

60 식품분야 규제정책의 변화와 향후 식품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표 3-8〉 부처별 식품관련 주요 개혁 내용

년도	주요 개혁내용
'98	음식점 및 집단급식소에서 조리사 의무고용 완화, 식품접객업소 영업시간 제한폐지, 즉석판매가공업업소의 자가품질검사 완화, 건강보조식품 등 사전제품검사제 폐지, 식품관련 영업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 식품위생관리인 의무고용제 폐지, 식품위생교육 완화
'99	식품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개선(식품공전), 식품형태에 대한 제조방법 개선(丸형태, 캡슐형태 허용), 건강보조식품 제도 구체화, 불필요한 자가검사항목 정비, 식품 포장재의 잔류용제 검사 개선, 우유 유통기한 설정규제 개선, 식품가공 시설기준 개선, 식품 유용성 표시·광고 규제완화, 인삼제품에 대한 중복관리 개선
'05	농산물 품질인증제도 개선, 농축산물 수입신고 일원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도입, 식품원료에 대한 원산지표시 부담완화, 원료의 수입신고필증 개선, 유통기한 외에 품질유지기한 표시제 도입,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제형제한 개선, 인삼 포장 단위 규제 완화, 품목제조 보고 부담 완화, 자가품질검사부담 완화, 건강기능식품의 유형 표시 규제 개선, 표시의무를 위반한 제품의 판매자 책임 완화, 건강기능식품관련 행정조사 요건 구체화
'07	식품표시기준 개선, 쇠고기 원산지표시제 확대, 식품 영양표시기준관련 행정처벌 완화, 축산가공품의 유용성 표시기준 완화, 식품위생업소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영업허가 직권취소 등), 영업신고 대상인 식품유형 명확화(단순가공식품의 개념 등), 식자재 전문공급업(물류창고) 신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경품제공 광고 허용,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대상 식품군 확대, 천일염 기준규격 신설, 냉동·냉장온도 측정기준 개선, 농수산물 보존·유통기준 개선, 농민주 제조·판매 활성화, 식품 자가품질검사제도 개선(검사주기, 검사면제), 영양사 자격시험제도 개선
'10	천일염 기준규격 완화, 가축의 초유납유금지 완화, 수산물의 미생물기준 완화, 식품운반업의 차고지 의무 완화, HACCP 적용업소 지정 신청서류 간소화, 수산물 품질인증 연장절차 간소화, 위반행위 경중에 따라 처벌기준 세분화, 천연감미료 사용범위 확대,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을 위한 별도 시설기준 마련, 업종별 영업자 시설기준 개편, 영업자 준수사항 완화, 어린이 기호식품 범위 재검토,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제 활성화, HACCP 적용업체·즉석제조판매제조·가공업의 자가품질검사제 개선, 영세업체에 대한 HACCP 적용면제, 유통단계 농산물의 안전성 증복조사 개선, 농약잔류 허용기준의 통일, 유해물질 잔류기준의 신속한 설정을 위한 부처간 협조체계 구축

제3절 식품안전 분야의 규제개선 방향

1. 시장유인적 규제방식의 확대

규제는 명령지시적 규제와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시장유인적 규제가 있다. 명령지시적 규제는 피규제자가 준수해야 할 행위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방식인데, 규제내용이 명확하고 규제집행이 용이하여 집행관료들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인력과 정보가 제한된 중소기업들도 선호하는 규제라고 할 수 있다. 반면, 획일적으로 규제함으로써 현실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상황을 포섭하지 못하고 경직적으로 운영되게 된다. 규제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특정한 방법만을 강요하기 때문에 신기술 적용 및 신상품 개발을 저해한다.

시장유인적 규제방식은 ‘민간 또는 시장의 결정과 참여를 활용하는 규제방식’을 말한다(김태운, 1999). 예컨대 성과기준 규제, 면제조항, 과정 규제, 사후적 통제, 동기유인 및 보상 등이 있다. 성과기준 규제는 정책으로 달성하려는 결과나 목표수준 자체를 규제로 설정하는 것으로서, 기업은 주어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예컨대 식품안전기준(미생물 허용치)이 이에 해당된다. 면제조항은 피규제자가 성과기준 규제 또는 명령지시적 규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예컨대 특정 설비를 갖추도록 요구하면서, 다만 결과적으로 미생물 안전수준을 준수하는 업체는 설비 구비의무를 면제하는 경우이다. 정보의 제공은 생산자와 소비자간에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수업소 인증제, 제품의 가격/품질 등에 대한 표시의무 등을 실시하는 것이다. 경제적 유인의 예로는 환경부담금을 오염배출량에 비례하여 부과함으로써 오염물질 배출량을 감소하려는 노력을

유도하는 규제이다.

환경 규제분야에서는 성과기준 규제 등 시장유인적 규제가 일부 도입되고 있으나, 식품분야에는 여전히 명령지시적 규제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규제방식도 위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적 성격의 규제, 사전절차적 규제가 많은 것도 특징이다. 식품안전 사고의 경우 원인규명도 어렵고, 유해식품 리콜조치 및 소비자 불안감을 수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산업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될 위험이 있다고 인식되기 때문이다. 한편, 식품 업계가 영세하고 식품안전 단속을 위한 행정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명령지시적 규제는 규제집행 당국과 피규제자 모두가 이해하기 쉽고 집행하기 쉬운 장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규제의 효율성과 집행가능성 측면에서, 식품관련 세부 규제별로 규제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본다. 예컨대, 식품영업의 경우 현행 신고제에서 사후적 규제로 전환이 검토될 만하다.

2. 식품안전분야에 기술영향평가제 도입

식품의 기준규격 및 시험방법 등은 기술기준에 해당되는데 식품의 생산, 가공, 유통단계에 따라 부처와 관련 법령이 나뉘어져 있어, 기준·규격이 복잡하고 검사체계의 중복문제가 있다. 그러나 그간 전문성 문제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제대로 심사가 이루어지 못하고, 부처가 제시한 원안대로 수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에 기술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되어 각 부처가 가지고 있는 전문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실질적 규제심사를 할 계기가 마련되었다. 식품안전 관련 전문가들이 기술영향평가T/F에 참여하여 규제심사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규제일몰제의 실질적 운용

식품안전 규제 중 세부기술적 사항에 대해서는 대부분 행정규칙, 즉 고시의 형태로 되어 있다. 2009년부터는 정부내 모든 행정규칙에 대해 일몰제⁹⁾ 도입이 의무화되었다. 효율성과 실효성이 미흡한 식품안전관리 제도에 대해서는 규제 일몰기간 도래시 규제를 철폐하거나 근본적인 규제 재설계가 필요하다. 규제가 무조건 많고 강하다고 식품안전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불필요하거나, 효율성이 낮은 규제는 행정 집행비용을 증가시키고 공무원의 행정력을 분산시켜 식품안전관리를 어렵게 하고 사회적 비용만 증가시킬 수 있다. 식품안전사고 후속조치로서 과도하게 강화시킨 규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9) 훈령·예규 등의 발령과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훈령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존속기간 또는 재검토기간을 설정하여야 함





제4장 식품안전규제 개선내용 분석

제1절 식품안전 법령 체계

제2절 식품안전법령 규제개선 현황



4

식품안전규제 개선내용 <<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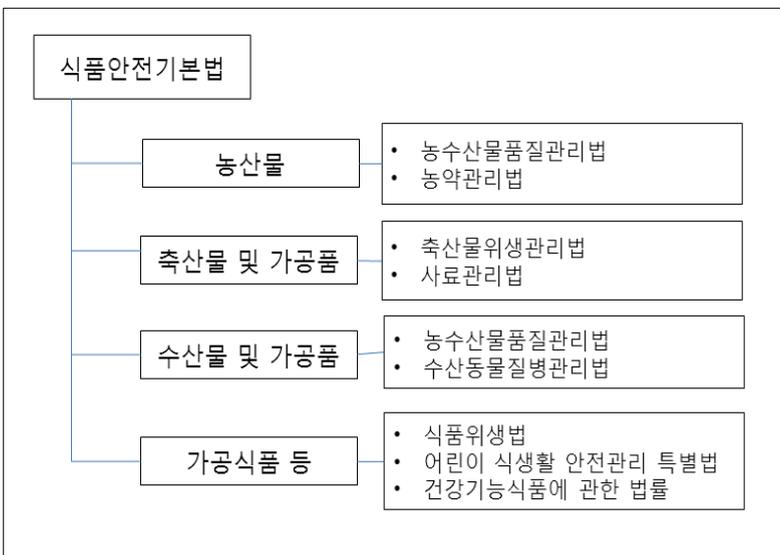
제1절 식품안전 법령 체계

1. 주요 법령

[그림 4-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식품안전에 관련된 우리나라의 주요 법령은 2008년에 제정된 식품안전기본법을 기본법으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가공식품분야로 구분되어 제정되어 있다.

과거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법령은 식품위생법 등 총 3개의 법령으로 가공식품의 안전을 담당하는 법령들이었다.

[그림 4-1] 식품안전 관련 주요 법령



2. 제정현황

식품안전에 관련된 4개의 법령의 제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표 4-1>에 제시된 바와 같다.

1962년 식품위생법이 최초로 제정되어 현재까지 식품안전의 근간이 되고 있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2002년,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은 2008년, 그리고 같은 해에 식품안전기본법이 제정되었다.

<표 4-1> 식품안전 법령 제정현황

법령명	제정시기	시행시기
식품안전기본법	2008.6.13	2008.12.14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2008.12.9	2008.12.14
식품위생법	1962.1.20	1962.4.21
식품위생법 시행령	1962.6.12	1962.6.1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1962.10.10	1962.10.10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2002.8.26,	2003.8.27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3.12.18	2003.12.18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4.1.31	2004.1.3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2008.3.21	2009.3.2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2009.3.20	2009.3.2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2009.3.20	2009.3.22

3. 주요내용

〈표 4-2〉에는 식품안전 관련 법령이 식품안전기본법 등 총 4개 법령의 제정 목적 및 주요 내용이 정리되어 있다.

식품안전기본법은 시행규칙없이 식품안전을 관장하는 기본법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 식품안전에 대한 국가, 지자체의 책무 및 위원회, 기본계획 수립 등 규정하고 있다. 식품안전에 관한 세부규정은 식품 등 첨가물, 수입식품 관리, 음식점 관리 등 식품위생법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으며,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리 등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법령에, 그리고 최근 관심이 많은 어린이 식생활에 관한 규정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표 4-2〉 식품 관련 주요 법령 목적 및 내용

법령명	법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식품안전기본법	식품안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식품안전정책의 수립·조정을 위한 규정 -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식품안전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정보제공, 소비자참여
식품위생법	식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한 규정 -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위해평가, 표시·광고, 유통·수입식품 검사관리, HACCP 등 안전관리 제도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대상 식품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규정 - 어린이 기호식품 및 고열량·저영양식품의 분류, 광고제한, 영양성분 함량 색상·모양표지(신호등 표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 건전한 유통·판매를 위한 규정 - 건강기능식품의 인정, 기준 및 규격, 표시·광고 심의

제2절 식품안전법령 규제개선 현황

1. 총괄현황

가. 제개정 횟수

1962년 식품위생법이 제정된 이후 2011년까지 제·개정된 총괄 회수는 <표 4-3>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6회로 집계되었고, 식품위생법은 47회, 시행령이 72회, 시행규칙이 83회로 제·개정 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 연도별 제개정 회수 현황

(단위: 건)

구분	계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합계	206	21	26	28	36	95
식품위생법	50	2	3	3	10	32
식품위생법 시행령	73	6	8	8	17	34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83	13	15	17	9	29

나. 제·개정 유형

법의 제·개정 유형은 <표 4-4>에 제시된 바와 같이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새로운 법의 제정, 기존 법령의 일부개정, 전면개정, 그리고 타법 개정이다. 총 206회의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제·개정 현황을 유형별로 분류해보면 <표 4-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일부개정이 120회로 가장 많았고, 전부 개정도 10차례 있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제정이 각 1회씩 있었다.

〈표 4-4〉 재개정 유형별 현황

(단위: 건)

구분	계	제정	일부개정	타법개정	전부개정
합계	206	3	120	73	10
식품위생법	50	1	24	23	2
식품위생법 시행령	73	1	38	31	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83	1	58	19	5

2. 연도별 현황

가. 식품위생법

1) 1960년대

〈표 4-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식품위생법이 1962년에 제정된 이후 1960년대에는 1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개정 내용은 총 6건으로 신설이 2건, 강화가 3건으로 분석되었다.

〈표 4-5〉 1960년대 식품위생법 개정안 중 규제 내용

(단위: 건)

개정시기		계	강화	신설	완화	폐지	타법 개선	기타
차수	계	6	3	2	-	-	-	1
1회	1962.1.20	제정		-	-	-	-	-
2회	1967.3.30	6	3	2	-	-	-	1

즉, 법 제정이후 주로 새로운 조항의 신설과 기존 조항의 강화가 주된 규제개선이었다.

2) 1970년대

〈표 4-6〉에 제시된 바와 같이 1970년대는 총 3차례의 식품위생법개정이 이루어졌으며 개선 건수는 총 18건으로 분석되었다.

총 18건중 강화가 14건, 신설이 2건, 완화가 1건, 그리고 기타가 1건으로 분석되었다.

〈표 4-6〉 1970년대 식품위생법 개정안 중 규제 내용

(단위: 건)

개정시기		계	강화	신설	완화	폐지	타법 이관	기타
차수	계	18	14	2	1	-	-	1
1회	1973.2.16	6	4	2	-	-	-	-
2회	1974.12.21	5	5	-	-	-	-	-
3회	1976.12.31	7	5	-	1	-	-	1

3) 1980년대

〈표 4-7〉에는 1980년대 식품위생법의 제개정 현황이 제시되어 있다.

총 17건의 규제가 개선되었는데 강화가 6건, 신설이 6건, 완화가 4건, 기타가 1건으로 여전히 규제의 강화와 신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표 4-7〉 1980년대 식품위생법 개정안 중 규제 내용

(단위: 건)

개정시기		계	강화	신설	완화	폐지	타법 이관	기타
차수	계	17	6	6	4	-	-	1
1회	1980.12.31	3	-	1	1	-	-	1
2회	1986.5.10	10	5	5	-	-	-	-
3회	1988.12.31	4	1	-	3	-	-	-

4) 1990년대

1990년대에는 〈표 4-8〉에 제시된 바와 같이 총 2회의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각 1회에 1건의 규제 강화가 추진되었다.

〈표 4-8〉 1990년대 식품위생법 개정안 중 규제 내용

(단위: 건)

개정		총계	강화	신설	완화	폐지	타법 이관	기타
총 횟수		2	2	-	-	-	-	-
1	1991.12.14	1	1	-	-	-	-	-
2	1995.12.29	1	1	-	-	-	-	-

1991년 이루어진 식품위생법 제9차 개정(법률 제4432호)은 위생접객업소와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일부개정 이었다.

5) 2000년대 이후

〈표 4-9〉에는 2000년대 이후 식품위생법 규제개선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표 4-9〉 2000년대 이후 식품위생법 개정안 중 규제 내용

(단위: 건)

개정시기	계	강화	신설	완화	폐지	타법 개정	기타
계	103	36	30	16	6	15	-
2000.1.12	13	3	1	3	6		
2002. 1.26	1					1	
2002.8.26	9	4	2	2		1	
2003.9.29	3	2	1				
2004.1.20	1	1					
2005.1.27	9	4	5				
2005.3.31	2			1		1	
2005.12.23	3	1	2				
2006.9.27	2	1	1				
2006.12.28	3	2	1				
2007.12.21	5	2	2	1			
2008.2.29	1					1	
2008.12.19	1		1				
2009.2.6	9			9			
2009.5.21	1	1					
2009.12.29	1					1	
2010.1.18	1					1	
2010.2.4	1					1	
2010.3.26	1					1	
2010.3.1	1					1	
2010.5.25	1					1	
2011.6.7	13	5	8				
2011.8.4	4	2	2				
2011.9.15	1					1	
2013.3.23	1					1	
2013.5.22	6	3	3				
2013.6.7	1					1	
2013.7.30	7	5	1			1	
2013.8.6	1					1	

2000년대 이후 2013년 10월까지 총 32차의 식품위생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이중 전부개정은 2009년에 1회, 일부개정은 총 16회, 타법개정은 총 15회로 나타났다.

개선된 규제의 성격을 보면 총 103건의 개정 중 강화 36건, 신설 30건으로 완화나 폐지 등에 비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장 최근인 2013년 8월 6일 타법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 그리고 2013년 7월 30일에는 국민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식품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의적·악의적인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식품행정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소비자도 식품단속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감독할 수 있는 식품위생검사기관을 확대하며, 위생검사 요청의 주체 및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무등록 영업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식품 내 농약 등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시 관련 부처 간 원활한 자료제공 의무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였다.

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1) 1960년대

1962년 6월에 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령의 1960년대 제개정 현황은 <표 4-10>에 제시된 바와 같다.

총 28건의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강화가 15건, 신설이 9건, 완화 및 폐지가 각 1건씩, 기타가 2건으로 분석되어 1960년대는 식품위생법과 시행령 모두 제정된 법령의 보완차원에서 강화, 신설이 대부분의 규제개선 정책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76 식품분야 규제정책의 변화와 향후 식품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표 4-10〉 1960년대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 중 규제 내용

(단위: 건)

개정시기	계	강화	신설	완화	폐지	타법 이관	기타
계	28	15	9	1	1	-	2
1962.6.12	제정	-	-	-	-	-	-
1962.11.27	1	1	-	-	-	-	-
1963.10.8	5	4	-	-	-	-	1
1966.11.26	9	8	-	-	-	-	1
1967.10.13	12	2	9	-	1	-	-
1968.9.12	1	-	-	1	-	-	-

2) 1970년대

식품위생법 시행령은 1962년에 제정된 이후 1970년 7월에 전부개정이 한차례 추진되었었다.

〈표 4-11〉에 제시된 결과를 보면 식품위생법 시행령은 1970년대에 전부개정 1회와 총 42건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규제 성격으로 보면 강화가 20건, 신설이 6건, 완화가 3건, 폐지 1건, 그리고 기타가 12건으로 강화와 신설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지만 점차 완화 건수도 점차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11〉 1970년대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 중 규제 내용

(단위: 건)

개정일	계	강화	신설	완화	폐지	타법 이관	기타
계	42	20	6	3	1	-	12
1970.7.20	전부개정		-	-	-	-	-
1972.12.30	7	3	1	-	1	-	2
1973.6.23	13	7	2	2			2
1974.8.14	4	1					3
1975.4.28	6	4	2				
1975.12.31	7	3	1				3
1977.3.8	2	1					1
1979.11.24	3	1		1			1

3) 1980년대

1980년대 식품위생법 시행령은 총 33건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표 4-12〉에 제시된 결과를 보면 강화가 17건, 신설이 9건, 완화가 5건, 그리고 기타가 2건으로 1970년대와 마찬가지로 강화와 신설이 주류를 이루지만 완화 건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8 식품분야 규제정책의 변화와 향후 식품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표 4-12〉 1980년대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 중 규제 내용

(단위: 건)

개정일	계	강화	신설	완화	폐지	타법 개정	기타
계	33	17	9	5	-	-	2
1981.4.2	5	3	-	2	-	-	-
1982.10.21	5	3	-	2	-	-	-
1984.4.13	2	2	-	-	-	-	-
1985.6.29	3	2	1	-	-	-	-
1986.11.11	10	2	8	-	-	-	-
1987.7.13	3	3	-	-	-	-	-
1988.6.27	1	-	-	-	-	-	1
1989.7.11	4	2	-	1	-	-	1

4) 1990년대

〈표 4-13〉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의 1990년 제개정 현황이 제시되어 있다.

1990년대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은 전체개정은 없고, 일부 개정이 총 20건이 이루어졌는데 타법 개정이 9건, 강화가 5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표 4-13〉 1990년대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 중 규제 내용

(단위: 건)

개정일	계	강화	신설	완화	폐지	타법 개정	기타
계	20	5	1	4	1	9	
1991.3.11	1		1		-	-	-
1991.8.24	1		-	1	-	-	-
1992.12.21	1	1	-	-	-	-	-
1993.2.24	1			1	-	-	-
1994.4.30	1			-	-	1	-
1994.12.23	2		-	-	-	2	-
1994.12.31	1	-	-	1	-	-	
1995.5.1	1					1	
1996.10.14	1	1					
1997.12.31	1	1					
1998.2.28	1					1	
1998.6.20	1					1	
1998.9.14	2	1			1		
1999.5.24	2					2	
1999.7.29	2			1		1	
1999.11.13	1	1					

5) 2000년대 이후

〈표 4-14〉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의 2000년 이후 올해까지의 제개정 현황이 제시되어 있다.

80 식품분야 규제정책의 변화와 향후 식품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표 4-14〉 2000년대 이후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 중 규제 내용

(단위: 건)

개정일	계	강화	신설	완화	폐지	타법 개정	기타
계	47	4	20	3	1	19	
2000.7.27	1	1			-	-	-
2000.12.30	2		1	1	-	-	-
2001.9.1	1		-	-	-	1	-
2003.4.22	2	1	1		-	-	-
2003.12.18	3		3	-	-		-
2005.7.27	4		4	-	-		-
2006.12.31	1	-	1		-	-	
2007.3.27	1					1	
2007.12.13	2	1	1				
2008.2.29	1					1	
2008.6.20	2		1			1	
2008.12.31	1					1	
2009.3.25	1			1			
2009.7.7	1					1	
2009.8.6	2		2				
2009.10.8	1					1	
2009.11.26	1					1	
2010.1.27	1					1	
2010.3.15	1					1	
2010.8.11	1					1	
2010.10.1	1					1	
2010.11.19	1					1	
2011.11.30	3	1		1	1		
2011.4.22	1					1	
2011.12.19	3		3				
2012.1.6	1					1	
2012.2.3	2		2				
2012.7.4	1					1	
2012.7.19	1					1	
2012.11.27	1		1				
2013.3.13	1					1	
2013.10.16	1					1	

총 47건의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규제신설이 20건, 타법 개정이 19건으로 규제개선의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강화가 4건, 완화가 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연대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개정 현황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4-15>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4-15> 연대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규제개선 현황

(단위: 건, %)

연도	개정 횟수		개정 건수		신설		강화		완화		폐지		타법 개정		기타 수정	
	횟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총계	65	100	294	100	73	100	107	100	77	100	4	100	1	100	32	100
1960	12	18	46	16	14	19	14	13	9	12	1	25	0	0	8	25
1970	15	23	65	22	10	14	20	19	15	19	1	25	0	0	19	59
1980	15	23	56	19	11	15	34	32	10	13	1	25	0	0	0	0
1990	9	14	58	20	14	19	13	12	26	34	0	0	1	100	4	13
2000	9	14	44	15	19	26	14	13	10	13	1	25	0	0	0	0
2010 이후	5	8	25	9	5	7	12	11	7	9	0	0	0	0	1	3

총 65회의 법 개정에서 총 294건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신설이 73건, 폐지가 4건, 완화가 77건, 강화가 107건, 타법이관이 1건, 그리고 기타가 32건으로 집계되었다. 연대별로 보면 신설과 강화가 폐지

와 완화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점유하나 2010년 이후 규제개선 실적이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제정 이후 어느 정도 법의 정비가 되었다는 입증일 수도 있고 2008년 식품안전기본법이 제정됨으로 인한 식품위생법에 대한 의존감이 적어진 것일 수도 있다.

3. 규제내용별 현황

가. 식품의약품안전청 2011년도 신설 및 강화 규제¹⁰⁾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총 12개의 근거법령하에 규제를 등록하고 있다. 이 중 관세법, 대외무역법,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약사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의료기기법, 의료법, 화장품법,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9개 근거 법령을 제외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등 3개의 법률과 관련된 세부 규제내용을 분석하였다.

167규제 중 45규제가 식품안전관련 규제였으며 모두 사회적 규제에 해당하였다. 이 중 주규제는 42규제, 부수규제는 3규제였다.

10) 2010년 현황이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라고 부처명을 사용함.

〈표 4-16〉 2010년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법령 심사결과

근거법령	규제 수	변경사유									
		기준 규제	강화	신설	완화	폐지	내용 심사	누락 등록	존속 기한 연장	기타 감소	기타 내용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식품위생법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45개	4	11	7	1	6	1	6	1	4	8

주: 내용심사는 신규규제가 대상임.

2011년도에는 원료의약품 신고지침 개선안,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동물실험시설 등의 지도감독에 관한 제정안, 대한약전 개정안,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식품 등의 유통기한 설정기준개정안, 식품 접객업 중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개정안 등 26개 법령에 대해 신설 5건, 강화 30건 등 총 35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하였다. 심사대상 35건 중 1건에 대해서는 부대권고하고, 34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나. 2012년도 규제개선 과제

2012년 공생발전을 위한 규제 개혁 추진하면서 서민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규제를 개선하는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규제 신설·강화는 최대한 억제하여 규제총량 관리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2012년에는 기준 규제에 대한 지속적 정비를 위하여 규제부담 형평성 제고, 민생친화적(Life-Friendly) 규제환경 조성, 투자활성화 및 미래대비, 개방화·국제화에 대응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총 1,184개의 규제개혁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내용별로는 주택·건설·금융·식품 관련 과제가 전체의 절

84 식품분야 규제정책의 변화와 향후 식품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반(51%) 가량을 차지하였다. 이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규제개혁과제는 총 108과제로 전체의 9.1%를 차지하였다.

〈표 4-17〉 2012년 부처별 규제개혁과제 현황

구분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식품의약품 안전청	농림수산 식품부	기타 부처
과제 수(건)	293	113	108	87	583
비중(%)	24.7	9.5	9.1	7.3	49.4

주: 해양수산부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에 포함
 자료: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내부자료, 2013.

1) 규제 신설

〈표 4-18〉에는 최근 5년간 식품안전분야 신설된 규제목록이 제시되어 있다.

〈표 4-18〉 2008년 이후 식품안전분야 규제 등록 신설 목록

규제사무명	근거 법령	소관 부처	변경 사유	분류 유형	등록 단위	시행일
식품위해요소중점 관리기준 적용업소 지정신청	식품 위생법	보건 복지부	내용심사 (신설)	사회적 규제	부수적 규제	2009- 08-07
식품위해요소 중점 관리기준 지정취소 기준	식품 위생법	보건 복지부	내용심사 (신설)	행정적 규제	부수적 규제	2009- 08-07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시설 기준 등	어린이 식생활안 전관리 특별법	보건 복지부	내용심사 (신설)	사회적 규제	부수적 규제	2009- 08-12
규제의 재검토	식품 위생법	보건 복지부	신설	사회적 규제	부수적 규제	2011- 12-08

규제사무명	근거 법령	소관 부처	변경 사유	분류 유형	등록 단위	시행일
부적합 수입식품 등에 대한 식품 안전 교육명령 등	식품 위생법	보건 복지부	신설	사회적 규제	부수적 규제	2012-01-17
검사명령 이행기간 등	식품 위생법	보건 복지부	신설	사회적 규제	부수적 규제	2012-01-17
표시·광고의심의대상등	식품 위생법	보건 복지부	신설	사회적 규제	부수적 규제	2011-12-08
수입식품신고 대행자 등록제도 운영	식품 위생법	보건 복지부	신설	사회적 규제	부수적 규제	2012-01-17
영업등록 및 변경	식품 위생법	보건 복지부	신설	사회적 규제	부수적 규제	2012-12-08
공제회 설치인가 등	식품 위생법	보건 복지부	신설	사회적 규제	부수적 규제	2012-12-08
수입자 의무 및 처분 근거	식품 위생법	보건 복지부	신설	사회적 규제	부수적 규제	2011-08-19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영업자 준수사항	식품 위생법	보건 복지부	신설	사회적 규제	부수적 규제	2011-08-19

2) 규제 강화

최근 5년간 식품안전분야 관련 규제 사항을 분석한 결과 규제 강화는 총 20건이 이루어 졌다. 이중 식품위생법은 총 18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2건이었다.

86 식품분야 규제정책의 변화와 향후 식품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표 4-19〉 2008년 이후 식품안전분야 규제 등록 강화 목록

규제사무명	근거 법령	소관 부처	변경 사유	분류 유형	등록 단위	시행일
영업의 신고대상 업종	식품 위생법	보건 복지부	강화	사회적 규제	주된 규제	2013-07-01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 및 준수사항	식품 위생법	보건 복지부	강화	사회적 규제	주된 규제	2012-02-17
건강기능식품 관련 영업자 준수사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보건 복지부	강화	사회적 규제	주된 규제	2012-08-01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식품 위생법	보건 복지부	강화	사회적 규제	주된 규제	2013-01-31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영업자의 생산실적 보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보건 복지부	강화	사회적 규제	부수적 규제	2010-10-29
식품및식품첨가물제조, 가공업자의 준수사항및 보고의무(생산 실적등의보고)	식품 위생법	보건 복지부	강화	사회적 규제	주된 규제	2011-08-19
위생등급에따른 우수업소, 모범업소의 지정(식품위생법령위반 우수업소·모범업소출입·검사·수거)	식품 위생법	보건 복지부	강화	사회적 규제	주된 규제	2011-08-19
식품의 허위 표시, 과대 광고금지(허위표시·과대광고및과대포장범위)	식품 위생법	보건 복지부	강화	사회적 규제	주된 규제	2011-08-19
식품관련 업종별 시설기준	식품 위생법	보건 복지부	강화	사회적 규제	부수적 규제	2012-01-17
행정 제재 처분 기준 신설	식품 위생법	보건 복지부	강화	사회적 규제	부수적 규제	2012-01-17

규제사무명	근거 법령	소관 부처	변경 사유	분류 유형	등록 단위	시행일
식품관련 허가 등의 수수료 납부	식품 위생법	보건 복지부	강화	행정적 규제	부수적 규제	2012-01-17
식품관련영업허가의취소(행정처분기준강화)	식품 위생법	보건 복지부	강화	사회적 규제	부수적 규제	2011-08-19
수입식품등 정밀검사 기간	식품 위생법	보건 복지부	강화	사회적 규제	부수적 규제	2011-08-19
수입식품검사제도(수입식품정밀검사)	식품 위생법	보건 복지부	강화	사회적 규제	부수적 규제	2011-08-19
위해식품등의 폐기처분등	식품 위생법	보건 복지부	강화	사회적 규제	부수적 규제	2009-08-07
식품관련 종사자 건강진단	식품 위생법	보건 복지부	강화	사회적 규제	주된규제	2009-04-03
자가품질검사 의무	식품 위생법	보건 복지부	강화	사회적 규제	주된규제	2009-04-03
식중독에 관한 조사보고	식품 위생법	보건 복지부	강화	사회적 규제	주된규제	2009-08-12
위해식품등의 판매등 금지	식품 위생법	보건 복지부	강화	사회적 규제	주된규제	2009-08-07

3) 규제 완화

최근 5년간 식품안전분야 관련 규제 사항을 분석한 결과 규제 완화는 총 1건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관련 건으로 행정처분 등에 대한 규정개정이었다.

88 식품분야 규제정책의 변화와 향후 식품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표 4-20〉 2008년 이후 식품안전분야 규제 등록 완화 목록

규제 사무명	근거 법령	소관 부처	변경 사유	분류 유형	등록 단위	시행일
건강기능식품 관련 행정처분 등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보건 복지부	완화	사회적 규제	부수적 규제	2008-02-29

다. 2013년도 식약처 설치 및 이관 규제

1) 식약처로 이관된 규제

가) 「축산물위생관리법」

2013년 국무총리실 산하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설치되면서 여태껏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근거하여 농식품부가 수행하던 축산물위생관리업무 전체가 식약처로 이관되었다.

〈표 4-21〉에는 식약처로 이관된 업무 내용이 정리되어 있다.

〈표 4-21〉 식약처로 이관된 「축산물위생관리법」상의 업무

장 및 조	주요 내용
제1장 총칙(제1조~제3조)	○ 목적,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축산물 등의 기준·규격 및 표시(제3조의2~제6조)	○ 축산물위생심의 위원회 설치 ○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 용기등의 규격 ○ 축산물의 표시기준
제3장 축산물의 위생관리 (제7조~제10조의2)	○ 가축의 도살·처리·집유, 축산물 가공·포장 및 보관 ○ 위생관리기준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의 설치

장 및 조	주요 내용
제4장 검사 (제11조~제20조의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의 검사 ○ 축산물의 검사 ○ 가축의 사육방법 등에 관한 지도 ○ 검사관, 책임수의사 임명 ○ 검사원 채용·관리 ○ 수입축산물의 신고·검사 ○ 수입·판매 금지 등 ○ 축산물위생감시원(축산물명예감시원) ○ 축산물위생검사기관 관리(평가 등)
제5장 영업의 허가 및 신고 등 (제21조~제33조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허가·신고, 위생교육 ○ 위해축산물 회수 ○ 위생교육 ○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 위해평가
제6장 감독 등 (제34조~제38조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실적 등의 보고 ○ 시설개선, 압류·폐기 또는 회수 등 감독
제7장 보칙 (제39조~제44조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상금, 보조금 ○ 가축 외의 동물 등의 검사 ○ 수수료, 공중위생상 위해 시의 조치, 청문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8장 벌칙(제45조~제4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벌칙, 양벌규정, 과태료

자료: 최지현, 이계임, 2013.

나) 「농수산물품질관리법」

〈표 4-22〉에는 식약처로 이관된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 농식품 부가 수행해 온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 및 농산물 안전성조사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표 4-22〉 식약처로 이관된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상 농산물 안전관련 업무

장 및 조	주요 내용
제4장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제56조~제5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 거짓표시 등의 금지 ○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의 조사 ○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위반에 대한 처분
제5장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 (제60조~제6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계획 ○ 안전성조사 ○ 시료 수거 등 ○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 농수산물안전에 관한 교육 등 ○ 분석방법 등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 농산물의 위험평가 등

2) 식약처에서 농식품부로 위탁한 업무

2006년 당시 식품안전처 출범을 위해 총리실이 제시한 조정방안을 기본원칙으로 하였다.

즉, 생산부터 소비까지(farm-to-table) 식품안전처가 식품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생산단계 집행기능은 농림부·해양수산부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종전의 농림수산식품부가 수행하던 축산물의 위생안전 기능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하되, 농장·도축장 및 집유장의 위생·질병·품질관리·검사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게 되었다.

가) 축산물안전 관련 위탁업무

축산물 안전과 관련한 업무는 다음과 같은 총 21가지 업무가 이관되었다.

- 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작업장(농장 및 집유장만 해당, 이하 동일)지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
- ② HACCP 적용작업장등에 대한 조사 및 평가
- ③ HACCP 적용작업장등에 대한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
- ④ 농장, 도축장 및 집유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에 필요한 기술·정보 제공 및 교육훈련 실시
- ⑤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으로 지정받은 자에 대한 시설 개선을 위한 용자사업 등의 우선지원
- ⑥ 도축장의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과 그 운용의 적정성 평가 및 사업비 등 지원
- ⑦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 및 도축장에 대한 출입 및 조사
- ⑧ 도축업의 영업자에 대한 조치
- ⑨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의 사업(농장 및 집유장 관련 사업으로 한정)에 대한 비용 지원 및 감독
- ⑩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 연장
- ⑪ 농장에서의 식용란 검사에 관한 사항
- ⑫ 가축의 사육방법 등 개선에 필요한 지도
- ⑬ 도축장 및 집유장에 대한 검사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검사관 및 그 업무를 보조하는 검사원의 임명·채용·배치에 관한 사항
- ⑭ 도축업·집유업 영업자에 대한 축산물 검사 결과 보고 명령 및 검사관에 대한 도축장·집유장 검사와 축산물 수거 명령
- ⑮ 검사관에 대한 압류·폐기 명령(도축장 및 집유장에 관한 명령만 해당)

- ⑯ 포상금의 지급(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와 관련된 위반행위를 하거나 가축에 대한 부정행위를 한 자를 신고·고발 또는 검거한 사람 및 검거에 협조한 사람에 대한 지급으로 한정)
- ⑰ 조치 명령(도축업 및 집유업의 영업자에 대한 명령만 해당)
- ⑱ 제43조제1호에 따른 청문(제3호에 따라 위탁된 권한에 따른 청문만 해당)
- ⑲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 판정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고시
- ⑳ 보상가격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고시
- ㉑ 검사원(제13호에 따라 채용·배치 권한이 위탁된 검사원으로 한정) 교육실시기관의 지정·고시 및 교육에 관한 고시

나) 농산물안전 관련 위탁업무

농산물 안전을 관리하는 관련 업무중에는 농산물안전성조사관련업무만 식약처로 이관되었다.



제5장 식품안전관리 합리화를 위한 향후 규제개선 방향

제1절 현황 및 문제점

제2절 식품규제 개선에 대한 인식

제3절 현 정부의 규제개선 방향



5

식품안전관리 합리화를 << 위한 향후 규제개선 방향

제1절 현황 및 문제점

규제개혁위원회가 출범한 이래 약 15년간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고, OECD등 해외에서도 우리의 규제개혁 시스템과 추진의지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개혁 성과에 대한 국민체감도와 기업만족도는 그다지 높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규제개혁이 신자유주의라는 특정 이데올로기에 치우쳐 있다는 비판 역시 적지 않다. 규제가 정부의 주요 정책수단의 하나임에도 규제개혁은 모든 규제를 나쁜 것으로 보고 필요한 규제까지 없애는 활동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다. 규제를 기업 중심적이고, 규제감축 일변도라고 비판하는 주장 역시 적지 않다.

1. 신설규제 관리

신설 규제에 대한 품질관리는 지난 40년 동안 여러 제도 개선을 통해 다소 개선되었다고 생각된다. 그간 규제개혁위원회에서의 엄격한 심사를 통하여 각 부처는 신설규제 제정 및 규제영향분석에 대하여 신중해지고 불합리한 규제는 사전에 걸러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

- ① 규제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규제의 파급효과 즉, 규제영향분석이 잘 되어야 하는데 규제의 비용편익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 ② 순환근무제하에서 잦은 보직변경으로 인하여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하다.
- ③ 관련분야 통계가 미비하다. 규제를 받는 산업현황에 대한 기초 통계가 부족하고, 특히 핵심적 통계자료는 대개 피규제 집단이 보유하고 있어서 자료의 신뢰성이 낮다.
- ④ 부처 자체 규제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부처 자체 규제개혁 업무는 규제법무담당관실이 담당하고 있는데, 부처 전체 규제개혁을 이끌어 갈 리더쉽이 약하고, 개별 법령을 가진 실·국에 대하여 규제대안 컨설팅, 규제영향분석서 작성방법에 대한 직원 교육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 ⑤ 아직도 규제제정에 대한 고위 공무원들의 관심은 미흡한 편이다. 주요 정책사항은 장관 보고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부처내 고위직들이 관심을 갖고 검토하지만, 법령은 사무관·주무관들이 안을 마련하고 바로 입법예고 절차로 진행되며 고위직들의 관심이 낮다. 정책방향이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에 법령 제정·개정 작업은 후속실행조치라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 ⑥ 행정부가 만드는 규제에 비하여, 의원 발의를 통한 규제신설에 대해서는 현재 관리수단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규제개혁위원회와 같은 별도의 심사기구에 의한 통제를 받지 않고 국회에 상정되는데 그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행정부 발의 법률안은 의원발의 건수의 10%내외에 불과하며, 통과기준으로 보아도 행정부 발의 법률은 통과된 전체 법률의 29%에 불과하다. 입법의 주도권이 확실히 국회로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 5-1〉 법률안 발의건수 및 처리현황

(단위: 건)

	18대 국회		19대 국회		
	발의	통과	발의	처리	통과
정부발의	12,220	1,663	5,132	1,039	408
의원발의	1,693	690	339	195	131
계	13,913	2,353	5,471	1,234	539

2. 기존규제 정비

기존규제의 개혁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이해집단들의 반발 뿐 아니라 복잡하게 얽혀있는 규제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조정하여야 한다. 규제개혁 체감도가 크지 않은 이유가 바로 핵심 덩어리 분야의 규제 개혁이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이다. 수도권 규제는 대표적인 분야이다. 수도권에는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고, 많은 공장과 학교가 들어서 있다. 국가 전체 경제적 부가가치의 60%를 생산하는 수도권에서 신규투자 및 공장 증설이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팔당호 수질 보전을 위한 상수원규제 및 수도권 과밀화 방지라는 이유로 공장총량제 등 규제가 강력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지역균형발전을 주장하면, 수도권 규제완화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내에서 규제개선 절차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근본적인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서는 국회 논의과정 및 구체적인 인허가 과정에서 중단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규제개혁에 강력한 정치력의 뒷받침이 필요한 까닭이다.

둘째, 규제강화와 완화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규제완화 중심으로 규제개혁이 추진되었다는 점이다.

과거 경제개발시대의 지나친 정부개입에 대한 반발로, 규제는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것만이 규제개혁으로 이해된 측면이 있다. 과도하게 시장 자율에 맡긴 결과 부작용이 크게 발생한 사례들이 있다.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함으로써 과잉 출혈경쟁을 초래하고 화물연대파업과 같은 사회문제를 불러온 사례도 있고, 토지이용에 대한 규제 완화로 국토의 난개발 및 사회적 SOC부족을 초래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독과점 및 경제적 강자에 의한 불공정 거래행위 혹은 환경오염 등에 있어서는 규제의 강화가 필요한데, 이러한 규제강화 사안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에서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셋째, 법규화 과정에서의 지연 문제이다.

관계장관회의에서 규제개혁대책이 결정되어도 부처에서 이를 법규화하는 과정에서 정상 추진되지 못하고 지연되거나 장애에 봉착하는 일이 많다. 개혁안에 대해서 입법예고단계에서 다시금 이해관계 조정이 새롭게 개시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조정하느라 추진이 지연되기도 하고, 해당 법령의 여타 조항 관련 쟁점이 정리되지 않아 규제관련 조항의 개선이 지연되기도 한다. 게다가 세부 규제내용을 지자체 조례·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경우 입법절차는 더욱 늦어지게 된다. '13년. 8월 현재 우리나라 조례규칙에 포함된 규제수는 49천여 개인데, 특히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의 경우 지자체 법령 개선절차가 장기화되기도 한다.

넷째, 규제집행 관행의 문제가 존재한다.

대체로 일선에서는 감사를 우려하여 법규를 경직적으로 해석하고 있

다. 행정청 재량으로 규제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어도, 선례나 내부지침, 상급기관의 지시공문 등이 없으면 동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집행공무원들의 관련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과 공무원들이 책임지기 싫어하는 보신주의 태도로 인하여 내부지침, 과거 선례(관행), 행정지도 및 가이드라인이 사실상 규제의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금융, 통신, 소방, 보건 등 전방위적 규제를 받는 산업의 경우 법령에 근거가 없이도 협조 공문만으로 민간이 주기적으로 자료제출 또는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 민원인들은 규제기관의 무리한 요구를 거절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또는 지역주민 반대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당한 경우에도 인허가를 잘 내주지 않고 행정처리를 지연시키는 경우가 있다. 선거직이 자치단체장이 되면서 규제집행이 자의적으로 되는 것이다.

제2절 식품규제 개선에 대한 인식

1. 조사개요

〈표 5-2〉에는 현재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련 규제정책에 대한 소비자와 식품업체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조사개요가 정리되어 있다.

〈표 5-2〉 조사 개요

조사대상	조사규모	표본선정방법	조사방법	조사기간
소비자 감시원	59명	유작위할당추출	직접기재	2013. 9.9~13
식품업체	32개소	상동	직접기재	2013.9.11~24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59명과 식품업체 32개소를 대상으로 약 2주일에 걸쳐 개발된 설문지를 직접 조사대상자가 기재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실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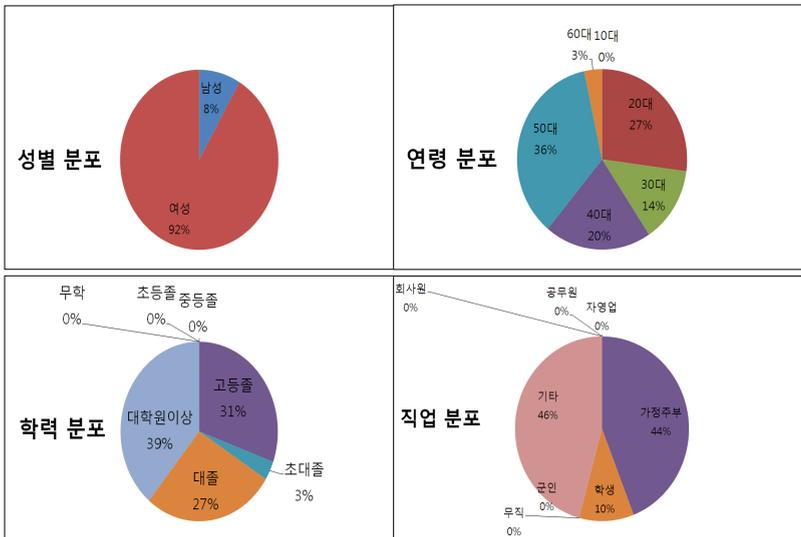
2. 조사결과

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소비자

조사대상 소비자 감시원 59명의 일반적 특성은[그림 5-1]에 제시된 바와 같다.

[그림 5-1] 조사대상자 소비자의 일반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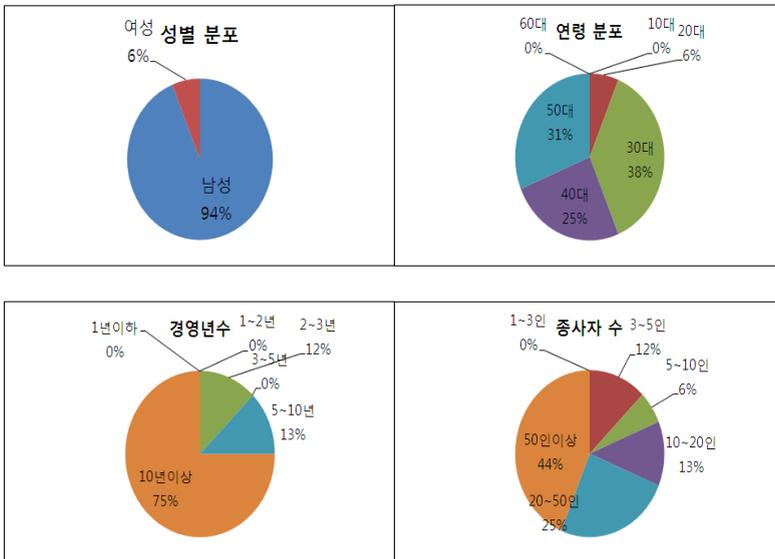
여성이 전체의 92%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연령은 50대, 20대, 40대, 30대 순으로 나타났으며, 직업은 가정주부, 기타가 전체의 90%로 분석되었다.

2) 식품업체

32개 조사대상 식품업체의 일반적 특성은 [그림 5-2]에 제시된 바와 같다.

식품업체 조사대상자는 전체의 94%가 남성으로 나타났고, 연령대는 50대, 30대, 40대 순이었다. 경영년수는 10년 이상이 전체의 75% 이상 이었고, 종사자 수는 50인 이상, 20~50인이 전체의 70%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그림 5-2] 조사대상자 식품업체의 일반적 특성



나. 현 식품안전 규제정책에 대한 불만사항

〈표 5-3〉에는 현 식품위생법을 비롯한 관련 4개 법령에 대한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대한 불만사항을 기존 연구에서 수집 및 새롭게 개발하여 불만 정도를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조사척도는 5점 만점의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고 조사항목은 총 13개로 선정되었다.

〈표 5-3〉 현행 식품안전 규제 정책에 대한 업체의 불만사항

조사내용	불만정도
6. 잦은 법 제개정	3.81
7. 비현실적인 규제강화 및 신설	3.69
4. 지도감시의 전문성 미흡	3.63
11. 정부의 일부 대기업 눈치보기	3.50
12. 업체간의 과다경쟁	3.50
5. 법적용어 자의적 해석	3.44
9. 일부 업주, 종사자 등 준법정신 미흡	3.44
1. 현재 기준규격의 엄격성	3.38
3. 업체 지도감독 횟수 및 업체간 형평성	3.38
2. 너무 강한 행정벌 규정	3.25
13. 담당 공무원의 실적주의	3.19
10. 업체에 대한 소비자의 비우호적 인식	3.00
8. 종사자들의 위생인식 미흡	2.94

주 : 불만정도는 5점 만점임.

잦은 법 제개정이 5점 만점에 3.81점으로 가장 식품안전규제 정책에서 불만사항으로 지적되었다. 그 다음은 비현실적인 규제 강화 및 신설, 지

도감시의 전문성 미흡, 그리고 정부가 일부 대기업 눈치보기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3개 조사항목 중 상대적으로 낮은 불만사항으로 조사된 것은 업체에 대한 소비자의 비우호적 인식 및 종사자의 위생인식 미흡으로 소비자와 업체간 상호 배타적이었던 분위기는 많이 개선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조사결과가 나타났다.

제3절 현 정부의 규제개선 방향

이번 박근혜 정부는 앞서 서술한 과거 규제개혁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3대 추진방향을 설정하였다. 우선 규제개혁과 국정과제 이행을 연계한 것이다. 규제개혁 체계를 국정과제 이행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려는 것이다. 국정과제 세부 실행방안에는 예산지원 정책과 규제를 통한 정책이 있는데, 그 중 규제수단의 추진에 대해서는 총리실에서 종합 컨트롤 타워로서 과제를 관리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규제개혁도 더욱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년도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각 부처 자체 규제정비계획에 국정과제 관련 규제수단을 빠짐없이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각 부처가 제출한 전체 852개 규제개선 과제 중 600여개가 국정과제 93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리실은 월별 점검회의를 개최해서 관계부처의 협업이 필요한 과제는 조정하는 등 추진이 늦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또한 이번 정부에서는 규제개혁의 방향을 규제완화와 규제강화 Two-Track으로 추진할 것임을 명확히 하였다. 종전에는 규제 완화 또

는 폐지만 규제개혁 대상으로 관심을 갖고, 규제 강화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처가 처리할 업무로 내맡기고 관여하지 않으려 했다. 오히려 규제심사과정을 통해서 규제가 과도하게 강화되는 것은 아닌지 견제하는 역할에 만족하였다. 이러한 규제완화 일변도의 규제개혁에 대한 반성에서 필요한 규제를 보완하고 강화하는 일도 규제개혁의 업무 범위에 포함하였다. 규제를 개혁대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잘 손질해서 사용해야 할 유용한 정책도구로 인정한 것이다. 과거에는 규제강화 과제는 규제개혁 과제에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국민안전과 약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규제는 규제강화 내용이라도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이다. 일반 국민들과 기업들이 규제개혁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 현장건의 내용을 중심으로 개혁과제를 선정하려는 것이다. 과거에는 특정한 분야에 대한 근본적 규제개혁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산발적으로 제기되는 개별 민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졌다. 규제에 대하여 근본적 개선 없이 개별 민원을 해결하는 것은 효과도 미약하고 규제개혁을 빙자한 특정업체 애로 해소창구로 활용될 우려가 있어서였다. 개별적인 국민 불편건의는 적기에 조치가 따르지 못하고 해당 분야의 규제개혁이 추진될 때까지 미루어졌다. 또한 법 규정은 바뀌어도 일선 규제집행 현장이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정부는 거창한 정책보다는 신발속 돌멩이, 손톱밑 가시와 같이 작지만 국민이 불편하게 느끼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려고 한다. 인수위 때부터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협업하여 현장의 건의를 발굴하여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특히, 단순히 규제수를 대폭 줄이는 양적 개혁보다는 개선한 규제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는지 확인하고 규제집행 관행을 고쳐나가려고 한다. 실제 규제가 현장 집행단계에서 개선되는지를 확인하고 고쳐질 때까지 계속해서 점검하려는 것이다.

다만 앞으로 몇 가지 보완되어야 할 점이 있다. 우선 사회적 규제에 대한 관리 문제이다. 80년대 이후 사회적 환경, 보건, 소방, 안전 등 사회적 규제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대형건물 화재사건,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가혹행위 등 대형 사회적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규제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사회적 규제는 대개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보편적 가치추구라는 공감대 때문에 비교적 쉽게 도입되고 있다. 사회적 가치는 비용과 편익을 계량화하기 곤란하여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에서도 철저한 검증이 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더구나 진입규제 등 전형적인 경제적 규제인 경우에도 약자인 중소기업 보호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해서 규제가 도입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

또한, 규제개혁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해소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간 역대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료, 교육, 환경, 법조, 조세 등 핵심적인 규제가 개선되지 못했던 것은 강력한 이익단체의 반발 때문이었다. 특히 우리나라 전문직 서비스업이 낮은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높은 소득을 누린 것은 높은 진입장벽이 있었기 때문이다. 규제개혁은 단순한 법령 개정문제가 아니라, 규제로 인한 이익과 손해를 입는 집단들 간의 사회갈등을 조정, 해결할 수 있을 때 규제개혁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제언



6

결론 및 정책제언 <<

제1절 결론

규제는 시장 메커니즘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의미하는 협의의 규제와 경제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정부의 개입활동 전체를 의미하는 광의의 규제로 정의되고 있다.

규제는 예산, 행정조직과 더불어 3대 정책수단 중의 하나로 감추어진 조세(hidden tax)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고, 예산이나 행정조직보다 손쉽게 제개정 할 수 있어 자칫 규제만능주의에 빠지기 쉬운 유혹이 있다. 정부의 규제개선은 신설된 규제의 엄격한 관리와 기존규제의 지속적 정비라 할 수 있다.

규제는 성격상 통상 경제규제, 사회규제, 행정규제로 분류되며 현재 우리나라는 규제는 경제규제 2,695건, 사회규제 2,302건, 그리고 1,955건의 행정규제로 구성되어 있다. 규제등록 기준으로 분류하면 주된규제와 부수적 규제로 구분되며 2013년 현재 총 14,177건(주규제 7,182건 + 부수규제)이 등록되어 운용중에 있다.

식품안전분야의 규제정책을 살펴보면 1962년 식품위생법 제정된 이후 2013년 상반기까지 제·개정된 회수는 총 202회로 나타났으며 연대별로는 2000년대 이후에 91회로 1960년대 21회, 70년대 26회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규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식품안전 규제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1962년 식품위생법 제정이후 1998년 김대중 정부의 규제총량제 실시 전까지 지속적인 규제, 신설이

완화와 폐지보다 주류였고, 이후 김대중 정부에서 현존 규제의 50%를 폐지한 규제총량제 실시로 사회규제인 식품안전규제도 규제폐지 등으로 식품안전관리 기반 약화되었다. 이런 폐단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후 사회규제인 식품안전규제는 식품안전관리 강화, 국제기준 조화, 식품안전관리 영역 확대 등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제강화, 신설이 또한 주된 추세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현 정부의 국민행복이라는 국정기조에 맞게 불량식품 근절 등을 위한 식품규제 합리화는 규제강화, 신설이 우선시될 것으로 예견되며 식품안전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올바른 규제정책의 의의는 건전한 기업의 육성과 정부의 관리로 국가경쟁력의 제고임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제2절 정책제언

무역 자유화, 개방화로 식품안전을 지켜내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식품안전규제의 합리화는 최후의 보루일 수 있다. 이런 국제적 현실속에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규제강화를 채택하고 있고, OECD도 식품안전에 대해서는 규제완화 일변도에서 벗어나 규제합리화를 권고하고 있다.

당장의 식품안전규제 강화는 저급한 외국제품의 국내 수입을 저지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동일한 잣대가 국내 생산식품에도 적용될 수밖에 없어 특히 영세업체들의 시장에서 살아남기에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1962년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식품안전 규제정책의 변화를 검토할 결과 식품안전규제는 사회규제로 국민의 삶의 질 수준에 직결되기 때문에 규제완화, 폐지 등은 조치는 신중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물론 식품안전규제는 규제 중 강력한 규제분야로 분류되기 때문에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규제신설, 강화도 신중해야 한다.

향후 기존의 식품안전규제의 지속적 관리 및 새로운 규제의 신설은 기존법과의 충돌, 중복,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신중히 처리해야 할 것이며 특히 규제 일몰제 채택, 규제 사전영향평가 실시, 규제 최소화 등을 제언하는 바이다. 그리고 현재 여러 부처에 흩어진 규제의 효율적인 제정과 관리를 위한 부처간 업무 조정 강화가 필요하며, 특히 식품안전관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 산하의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여러 법령 등에 사용되는 오래된 용어와 규정의 최신화가 시급히 필요하다.



참고문헌 <<

- 강은봉(2012). 규제 개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부산: 동아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용우(2010). 정부규제와 규제행정. 대영문화사.
- 김정해(2006). 주요 선진국의 규제개혁 비교연구.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 김태윤(1998). 규제영향분석을 위한 비용·편익분석 기법.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 김태윤(1999). 시장유인적 규제방식 개발.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 이계임 외(2008). 식품 관련 법체계 개편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세정(2009). 식품·의약품 안전 관련 법제 개선방안.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 정기혜 외(2003). 식품분야 규제개혁 정책에 관한 평가 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기혜 외(2011). 식품안전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아젠다 개발 등 추진 전략 수립.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기혜 외(2011). 우수위생관리기준(GHP) 도입 및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한 식품 관련 법·제도·정책 비교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최병선(2006). 정부규제론. 법문사.
- 최병선, 신종익(2002). 시장경제와 규제개혁. FKI 미디어.
- 최윤성(2010). 행정규칙상의 미등록규제 조사 연구용역.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홈페이지 <http://www.customs.go.kr/stats>
- 국회사무처 의안정보시스템 홈페이지 <http://likms.assembly.go.kr>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정보포털 홈페이지 <http://www.rrc.go.kr>
- 규제개혁위원회(1998~2009). 규제개혁 백서.
- 규제개혁위원회(2013). 규제개혁 백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



부록 1. 식품위생법 규제개선 내용(2000년 이후)

〈부표 1-1〉 식품위생법 제19차 개정 (일부개정)

재개정일	주요 내용	규제내용
2000.1.12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하여 소비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법 제10조).	강화
	인삼제품류 및 건강보조식품등에 대한 사전제품검사제도를 폐지함(법 제13조)	폐지
	제품검사의 표시 삭제(법 제14조)	폐지
	불합격품등의 판매 등 금지 삭제(법 제15조)	폐지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다가 영업의 허가가 취소되었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경우 동일 장소에서는 1년간, 그 위반자에 대하여는 2년간 식품접객업의 허가등을 제한함(법 제24조 및 제31조)	신설
	식품위생 교육(법 제27조)	완화
	식품위생관리인(법 제28조)	폐지
	시설이용의 거부금지(법 33조)	폐지
	영양사의 면허(법 제37조)	강화
	조리사 및 영양사의 결격사유(법 제38조)	완화
	시설의 개수명령 등(법 제57조)	완화
	사체해부(법 제68조)	폐지
	영업자의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위반등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법 제77조).	강화

116 식품분야 규제정책의 변화와 향후 식품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부표 1-2〉 식품위생법 제20차 개정 (타법개정)

재개정일	법령명	주요 내용
2002.1.26	법률 제6627호	민사집행법 개정

〈부표 1-3〉 식품위생법 제21차 개정 (일부개정)

재개정일	주요 내용	규제내용
2002.8.26	식품의 기구 및 용기·포장의 살균·소독에 사용되는 물질을 식품 첨가물로 관리하는 근거를 마련함(법 제2조제2호).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유전자재조합식품을 수입 또는 개발·생산하는 자에 대하여 안전성 평가를 받게 하고,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성 평가결과 식용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식품 등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함(법 제4조제6호 및 제15조 신설).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이 법에 적합하다고 사전에 확인하여 고시한 수입식품 등에 대하여는 수입식품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법 제16조제3항).	완화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법 제18조)	강화
	영업허가의 제한이나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의 제한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함(법 제24조 및 제30조).	완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동안 출입·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영업자가 영업시설의 개선을 위한 용자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품진흥기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함(법 제32조의2제8항).	신설
	영업정지·품목제조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의 금액을 종전의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함(법 제65조제1항).	강화
	위해식품 등을 제조·판매한 자 또는 무허가 영업자 등에 대하여 징역형을 5년 이하의 징역에서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이 법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법 제74조 내지 제77조).	강화

〈부표 1-4〉 식품위생법 제22차 개정 (타법개정)

재개정일	법령명	주요 내용
2002.8.26	법률 제6727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정

〈부표 1-5〉 식품위생법 제23차 개정 (일부개정)

재개정일	주요 내용	규제내용
2003.9.29	식중독 정의 및(법 제2조 내지 제67조)	신설
	영업허가의 제한(법 제24조)	강화
	영업자등의 준수사항(법 제31조)	강화

〈부표 1-6〉 식품위생법 제24차 개정 (일부개정)

재개정일	주요 내용	규제내용
2004.1.20	위생교육(법 제27조)	강화

〈부표 1-7〉 식품위생법 제25차 개정 (일부개정)

재개정일	주요 내용	규제내용
2005.1.27	위해식품 등의 평가제도 도입(법 제13조 신설)	신설
	위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식품의 수입·판매금지제도 도입(법 제16조의2 신설)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위생감시기능의 효율화(법 제17조제2항 신설)	신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역할 강화(법 제20조의2)	강화
	시민식품감사인제도 도입(법 제20조의3 신설)	신설
	영업허가등의 제한 강화(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	강화
	위해식품등의 회수 의무화(법 제31조의2 및 제58조제1항)	강화
	집단급식소에 대한 관리강화(법 제63조제1항, 제67조제1항 및 제69조)	강화
위반사실의 공표제도 도입(법 제65조의2 신설)	신설	

〈부표 1-8〉 식품위생법 제26차 개정 (타법개정)

재개정일	법령명	주요 내용
2005.3.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관한 법률

118 식품분야 규제정책의 변화와 향후 식품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부표 1-9〉 식품위생법 제27차 개정 (일부개정)

재개정일	주요 내용	규제내용
2005.3.31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운반업 및 식품접객업 등의 신고대상 영업에 대한 사무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민원사무로서, 현행 식품위생법시행령에서 법상 시·도지사의 사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동 사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려는 것임.	완화

〈부표 1-10〉 식품위생법 제28차 개정 (일부개정)

재개정일	주요 내용	규제내용
2005.12.23	식육의 원산지 등 표시제도 도입(법 제10조의2제1항 신설) 식품접객업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자가 식육을 조리·판매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그 식육의 원산지 및 종류를 표시하도록 함.	신설
	허위표시 등의 금지(법 제11조제1항 및 제58조제1항제1호) 식육의 원산지 등을 표시함에 있어서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영업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강화
	원산지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의 행정처분(법 제58조제1항제1호 및 제78조제1항 신설) 식육의 원산지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영업허가 취소, 영업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신설

〈부표 1-11〉 식품위생법 제29차 개정 (일부개정)

재개정일	주요 내용	규제내용
2006.9.27	영양표시제도 도입(법 제2조 내지 제10조)	신설
	교육(법 제40조)	강화

〈부표 1-12〉 식품위생법 제30차 개정 (일부개정)

재개정일	주요 내용	규제내용
2006.12.28	가. 쌀 원산지의 표시의무 등(법 제10조의3제1항, 제11조제1항, 제78조제1항제2호 및 부칙 제1항 단서) 2008년 1월 1일 이후부터 일정한 식품접객업자는 쌀을 조리·판매하는 경우 쌀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쌀 원산지 표시에 관하여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며, 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강화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제한(법 제18조) 식품위생검사기관이 검사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하는 경우 당연 지정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동일한 설립자 또는 동일 장소에서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다시 지정될 수 없도록 함.	강화
	식품진흥기금의 용도 확대(법 제71조제3항제7호 신설) 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에서 사용하는 급식시설 개·보수를 위한 용자 사업을 식품진흥기금의 용도에 추가함.	신설

〈부표 1-13〉 식품위생법 제31차 개정 (일부개정)

재개정일	주요 내용	규제내용
2007.12.21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의 도입(법 제2조제9호의2 신설, 법 제11조제1항 및 법 제32조의3 신설)	신설
	원산지표시대상의 확대(법 제10조의3)	강화
	식품접객업 영업장소에서 유흥접객행위의 금지(법 제31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신설
	조리사 또는 영양사의 결격사유에서 가벼운 정신질환자 제외(법 제38조제1호)	완화
	영업허가의 취소·정지 사유에 성매매알선행위 등 추가(법 제38조제1호)	강화

120 식품분야 규제정책의 변화와 향후 식품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부표 1-14〉 식품위생법 제32차 개정 (타법개정)

재개정일	법령명	주요 내용
2008.2.29	법률 제8852호	정부조직법 개정

〈부표 1-15〉 식품위생법 제33차 개정 (일부개정)

재개정일	주요 내용	규제강화
2008.12.19	식품안전정보센터(법 제54조)	신설

〈부표 1-16〉 식품위생법 제34차 개정 (전부개정)

재개정일	주요 내용	규제내용
2009.2.6	소비자 위생검사 등 요청제도 및 위해식품 등에 대한 긴급대응(법 제16조 및 제17조)	신설
	우수수입업소제도 도입(법 제20조)	신설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구분 등(법 제24조부터 제30조까지, 제95조제2호)	신설
	주문자 상표부착방식 제조식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법 제44조제5항)	신설
	식품등의 이물 보고(법 제46조, 제98조제2호 및 제101조제3항제3호)	신설
	위생수준 안전평가제도 도입(법 제50조)	신설
	식품안전정보센터 설립(법 제67조부터 제70조까지)	신설
	위해식품등 판매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법 제83조)	신설
	집단급식소 제공 식품의 보관 의무(법 제88조제2항제2호)	신설

〈부표 1-17〉 식품위생법 제35차 개정 개정 (일부개정)

재개정일	주요 내용	규제내용
2009.5.21.	출입·검사·수거 등	강화

〈부표 1-18〉 식품위생법 제36차 ~ 제41차 개정 (타법개정)

재개정일	법령명	주요 내용
2009.12.29	법률 제9847호	전염병예방법 전부개정
2010.1.18	법률 제9932호	정부조직법 개정
2010.2.4.	법률 제10022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정
2010.3.26	법률 제10191호	국민영양관리법 제정
2010.3.31	법률 제10219호	지방세기본법 제정
2010.5.25	법률 제10310호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

〈부표 1-19〉 식품위생법 제42차 개정 (일부개정)

재개정일	주요 내용	규제내용
2011.6.7	권장규격제도의 도입(안 제7조의2 신설)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기준·규격이 설정되지 않은 식품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를 권장하기 위한 규격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영업자가 권장규격을 준수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실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신설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안 제12조의2 신설) 1) 유전자재조합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축·수산물 등을 주원료로 사용한 식품등에는 유전자재조합식품임을 표시토록 함. 2) 표시의무자,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도록 함.	신설
	표시·광고의 심의(안 제12조의3 및 제13조제1항, 안 제75조제1항제1호, 안 제76조제1항제3의2호 신설) 1) 영유아식,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품에 대하여 표시·광고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심의를 받도록 함. 2)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자는 심의를 받지 않은 내용으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 3) 사전광고심의를 받지 아니한 경우 허가취소, 품목제조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신설

122 식품분야 규제정책의 변화와 향후 식품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재개정일	주요 내용	규제내용
	허위표시·과대광고 범위에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13조제1항 제1호).	강화
	위해평가 결과 공표에 대한 사전협의(안 제15조의2 신설)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위해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을 공표할 수 있음. 2)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위해와 관련된 사실 등을 공표하는 경우로서 위해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그 사실을 사전에 알리고 협의하여야 함.	신설
	식품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식품안전관리 자격을 갖춘 자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등록된 자에게 수입신고를 대행하게 할 수 있음(안 제19조의2 신설).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부적합 식품등을 수입한 영업자 또는 국내 유통 중인 수입식품 등에 대하여 출입·검사·수거를 실시한 결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영업자에게 교육명령을 할 수 있음(안 제19조의3 신설).	신설
	검사명령제도 신설(안 제19조의4 신설)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국내외에서 위해발생의 우려가 제기된 식품이나 수입식품 등에 대하여 국내외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도록 명령할 수 있음. 2) 검사명령을 받은 영업자로 하여금 검사 기한 내에 검사 등을 하도록 함.	신설
	식품 제조·가공업 및 수입판매업 등을 현행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37조제5항).	강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영업자에 “소분업자”를 추가함(안 제48조제1항 및 제2항).	강화
	조리사·영양사 직무범위 규정(안 제51조제2항 및 제52조제2항 신설, 안 제56조제1항) 1) 식단에 따른 조리업무, 구매식품의 검수 지원 등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의 직무를 신설함 . 2) 식단작성, 검식 및 배식관리 등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의 직무를 신설함. 3) 조리사의 교육에 보수교육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	강화

재개정일	주요 내용	규제내용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제시한 기준·규격 조사업무, 국제기구와 상호협력 등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조사·연구위원의 업무 범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안 제58조제2항 신설).	신설
	<p>시정명령 및 영업허가 등의 취소요청(안 제71조제3항 신설, 안 제77조제2항)</p> <p>1)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으로부터 시정명령 요청을 받은 관할관서의 장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하도록 하며 조치결과를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도록 함.</p> <p>2) 영업허가등의 취소요청을 받은 관할관서의 장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도록 함.</p>	강화

〈부표 1-20〉 식품위생법 제43차 개정(일부개정)

재개정일	주요 내용	규제내용
2011.8.4	다른 업체 또는 그 제품을 비방하는 광고를 금지함(안 제13조).	강화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58조)	강화
	음식업 공제사업의 실시(안 제60조, 안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4 신설)	신설
	식품공업협회의 명칭을 한국식품산업협회로 변경하고, 대상 사업에 식품안전과 식품산업 진흥 및 지원·육성에 관한 사업을 추가함(안 제64조, 제65조)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보유·관리하고 있는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 중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함(안 제90조의2 신설)	신설

124 식품분야 규제정책의 변화와 향후 식품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부표 1-21〉 식품위생법 제44차, 제45차 (타법개정)

재개정일	법령명	주요 내용
2011.9.15	법률 제11048호	청소년 보호법 전부개정
2013.3.23	법률 제11690호	정부조직법 전부개정

〈부표 1-22〉 식품위생법 제46차 개정 (일부개정)

재개정일	주요 내용	내용
2013.5.22	집단급식소에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추가함(안 제2조제12호).	강화
	수입식품신고 대행자가 수수료 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제3항제8호 신설).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의 위해방지를 위해 현장실사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수출국 정부 등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수출국 제조업소 등을 출입·검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신설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을 폐지하고,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3년마다 조사평가하도록 함(안 제49조제5항).	강화
	모든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의무적으로 조리사 및 영양사를 두어야 함(안 제51조제1항 및 제52조제1항).	강화
	식중독환자 최초 발견 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국민보건상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합동으로 원인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신설).	신설

〈부표 1-23〉 식품위생법 제47차 개정 (타법개정)

재개정일	법령명	주요 내용
2013.6.7	법률 제11873호	부가가치세법 전부개정

〈부표 1-24〉 식품위생법 제48차 개정 (타법개정)

재개정일	법령명	주요 내용
2013.7.30	법률 제11985호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부표 1-25〉 식품위생법 제49차 개정 (일부개정)

재개정일	주요 내용	내용
2013.7.30	식품 내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에 관한 부처 간 협업 규정을 신설하고, 업체의 잔류허용기준의 신청절차를 마련함.(안 제7조의3 신설)	신설
	식품위생검사기관도 위생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위생점검을 요청받을 수 있는 기관을 지방청 및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함(안 제16조)	강화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 식품위생검사기관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감독근거를 마련함(안 제26조)	강화
	영유아식품 제조업소 등의 경우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의무화하고, 2년마다 그 기준 준수 여부를 평가하도록 함(안 제49조제1항 단서 및 제49조제5항 단서 신설)	강화
	고의적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형량하한제 및 부당이득환수제를 도입함(안 제93조제4항 및 제94조제2항·제3항 신설)	강화
	허위표시 등의 금지의무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함(안 제94조제1항제2호의2 신설, 안 제95조제1호 및 제97조제1호)	강화

〈부표 1-26〉 식품위생법 제50차 개정 (타법개정)

재개정일	법령명	주요 내용
2013.8.6	법률 제11998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

126 식품분야 규제정책의 변화와 향후 식품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부표 1-27>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1차 개정 (일부개정)

재개정일	법령명	주요 내용
2000.7.27	대통령령 제16922호	식품위생법(食品衛生法)이 개정(2000. 1. 12, 법률 제6154호) 되어 조건부 영업허가제와 식품위생관리인(食品衛生管理人)의 의무고용제도등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부표 1-28>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2차 개정 (일부개정)

재개정일	법령명	주요 내용
2000.12.30	대통령령 제17088호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조리사의 의무고용 대상업소를 학교·병원 등 공공시설 및 공공기관의 집단급식소와 복어조리 음식점으로 한정함으로써 민간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와 복어조리음식점 이외의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조리사를 고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단체가 추천한 자를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부표 1-29>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3차 개정 (타법개정)

재개정일	법령명	주요 내용
2001.9.1	대통령령 제17351호	다수 법령에 분산되어 있던 수산물에 대한 관리규정을 통합하여 일원화하고, 수산가공산업을 육성하며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危害要素重點管理制度) 등을 도입함으로써 수산물의 품질관리를 강화하여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수산물품질관리법이 제정(2001. 1. 29, 법률 제6399호)됨에 따라 수산물 품질인증의 기준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부표 1-30〉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4차 개정 (일부개정)

재개정일	법령명	주요 내용
2003.4.22	대통령령 제17971호	식품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食品衛生法)이 개정(2002. 8. 26, 법률 제6724호)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유전자재조합식품(遺傳子再組食食品)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하여야 하는 경우를 정하고, 인체 위해식품등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 등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징금의 산정기준 및 과태료의 부과금액을 위반행위별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현행 식품위생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부표 1-3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5차 개정 (타법개정)

재개정일	법령명	주요 내용
2003.12.18	대통령령 제18164호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과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유통질서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이 제정(2002. 8. 26, 법률 제6727호)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 과징금·과태료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부표 1-3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6차 개정 (일부개정)

재개정일	법령명	주요 내용
2005.7.27	대통령령 제18978호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7374호, 2005. 1. 27. 공포, 2005. 7. 28. 시행)되어 위해우려가 제기되는 식품 등에 대한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위생감시기능의 효율화를 위하여 행정응원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동 위해평가의 대상·방법·절차 및 행정응원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식품위생관리 업무를 담당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시민식품감사인의 자격 및 직무범위를 정하며, 위해식품 등을 회수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기준 등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28 식품분야 규제정책의 변화와 향후 식품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부표 1-3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7차 개정 (일부개정)

재개정일	법령명	주요 내용
2006.12.21	대통령령 제19769호	식육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식육의 원산지와 식육의 종류를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7735호, 2005. 12. 23. 공포, 2007. 1. 1. 시행)됨에 따라 영업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일반음식점의 영업자가 쇠고기의 생육 또는 양념육을 구입용으로 조리·판매하는 경우에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등 식육의 원산지 표시의무자와 표시대상인 식육의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부표 1-34〉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8차 개정 (타법개정)

재개정일	법령명	주요 내용
2007.3.27	대통령령 제19958호	「소비자보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7988호, 2006. 9. 27. 공포, 2007. 3. 28. 시행)됨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소비자단체의 등록요건, 위해정보의 수집·관리, 집단분쟁조정 및 단체소송 등에 관하여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부표 1-35〉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9차 개정 (일부개정)

재개정일	법령명	주요 내용
2007.12.13	대통령령 제20448호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하는 식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식품의 영양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8005호, 2006. 9. 27. 공포, 2007. 1. 1. 시행)됨에 따라 식품에 대한 영양표시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부표 1-36〉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0차 개정 (타법개정)

재개정일	법령명	주요 내용
2008.2.29	대통령령 제20679호	작지만 경쟁력 있는 정부를 구현하고 새로운 행정환경에 적합한 국정운영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되어 보건복지부와 국가청소년위원회, 여성가족부의 가족 및 보육업무 등을 통합하여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함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부표 1-37〉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1차 개정 (일부개정)

재개정일	법령명	주요 내용
2008.6.20	대통령령 제20845호	쌀·배추김치·육류의 원산지 또는 종류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하며, 식품의 제조·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식품이력추적관리 제도를 도입하여 식품관리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8779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부표 1-38〉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2차 개정 (타법개정)

재개정시기	법령명	주요 내용
2008.6.20,	대통령령 제20854호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전부개정

130 식품분야 규제정책의 변화와 향후 식품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부표 1-39〉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차 개정 (타법개정)

재개정일	법령명	주요 내용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	광주지역 특별지방행정기관 청사의 통합 운영을 위하여 광주 청사관리소를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관리인력을 별도 증원 없이 충원하기 위하여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 입주할 부처의 인력 11명(노동부 1명, 국가보훈처 2명, 국세청 3명, 관세청 3명, 조달청 2명)을 이체받고 나머지 인력은 행정안전부의 자체 인력 등을 상계하여 충원하는 한편,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소속 지방체신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소관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기능을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로 이관하며 이에 따른 실무인력 29명(6급 이하)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체하고,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각 부처의 명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부표 1-40〉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4차 개정 (일부개정)

재개정일	법령명	주요 내용
2009.3.25	대통령령 제21371호	위해식품 등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회수계획량의 전량을 회수한 영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면제하던 것을 회수계획량의 5분의 4 이상을 회수한 영업자에 대하여 면제하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회수계획량의 3분의 1 이상을 회수한 영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경감하던 것을 회수계획량의 4분의 1 이상을 회수한 영업자에 대하여 경감하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부표 1-4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5차 개정 (타법개정)

재개정일	법령명	주요 내용
2009.7.7,	대통령령 제21626호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

〈부표 1-4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6차 개정 (전부개정)

재개정일	법령명	주요 내용
2009.8.6	대통령령 제21676호	최근 급증하는 식품위해사고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직접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영업시설 등의 위생검사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위해식품 등으로 판단되는 경우 판매금지 등 긴급대응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9432호, 2009. 2. 6. 공포, 8. 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 따라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어린이의 올바른 식생활 지원을 위하여 식품진흥기금 사업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시설 개수·보수에 대한 용자 사업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비용 보조 등을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이 영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부표 1-4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7차 ~ 제63차 개정 (타법개정)

재개정일	법령명	주요 내용
2009.10.8	대통령령 제21774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2009.11.26	대통령령 제21847호	농업과 수산조직의 통합이라는 정부조직의 개편 취지에 맞게 어업·어업인·수산자원 및 어장 등에 대한 기본이념과 지원내용 등을 통합하여 농림수산 분야의 기본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개정(법률 제9717호, 2009. 5. 27. 공포, 11. 28. 시행)됨에 따라, 어업인의 기준과 수산물의 범위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010.1.27	대통령령 제22003호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2010.3.15	대통령령 제22075호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가족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고 보건복지가족부의 기능을 보건복지정책 중심으로 재편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9932호, 2010. 1. 18. 공포, 3. 19.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조정하고, 각 실·국별 사무분장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조직의 탄력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132 식품분야 규제정책의 변화와 향후 식품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재개정일	법령명	주요 내용
2010.8.11	대통령령 제22332호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가족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고 보건복지가족부의 기능을 보건복지정책 중심으로 재편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9932호, 2010. 1. 18. 공포, 3. 19.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조정하고, 각 실·국별 사무분장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조직의 탄력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2010.10.1	대통령령 제22424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0.11.19	대통령령 제22497호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표 1-44>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4차 개정 (일부개정)

재개정일	법령명	주요 내용
2011.3.30	대통령령 제22794호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식품의 유형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전·후의 식품의 유형이 자가 품질검사 대상이 아닌 경우는 변경신고의무를 면제하는 한편,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과징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연간 매출액의 하한을 조정하고, 유통전문판매업의 정의 및 위해식품등의 공표방법을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부표 1-45> 식품위생법 시행령제65차 개정 (타법개정)

재개정일	법령명	주요 내용
2011.4.22	대통령령 제22906호	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

〈부표 1-46〉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6차 개정 (일부개정)

재개정일	법령명	주요 내용
2011.12.19	대통령령 제23380호	식품의 표시·광고에 대하여 미리 심의를 받도록 하고, 식품 등의 수입신고를 대행하려는 사람은 수입식품신고 대행자로 등록하도록 하며, 식품 관련 일부 영업에 대하여 등록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0787호, 2011. 6. 7. 공포, 12. 8. 시행, 법률 제11000호, 2011. 8. 4. 공포, 2012. 2. 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부표 1-47〉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7차 개정 (타법개정)

재개정일	법령명	주요 내용
2012.1.6	대통령령 제23488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

〈부표 1-48〉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8차 개정 (일부개정)

재개정일	법령명	주요 내용
2012.2.3	대통령령 제23619호	영업자에 의해 설립된 법인인 동업자조합이 조합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회를 설치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1000호, 2011. 8. 4. 공포, 2012. 2. 5. 시행)됨에 따라 공제회의 설치인가 절차, 공제회의 운영방법 및 공제사업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34 식품분야 규제정책의 변화와 향후 식품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부표 1-49〉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9차 ~ 제70차 개정 (타법개정)

재개정일	법령명	주요 내용
2012.7.4	대통령령 제23928호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12.7.19	대통령령 제23962호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표 1-50〉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1차 개정 (일부개정)

재개정일	법령명	주요 내용
2012.11.27	대통령령 제24202호	주류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주세법」에 따라 주류제조면허를 받아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에도 식품제조·가공업으로 등록하도록 하려는 것임.

〈부표 1-5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2차 개정 (타법개정)

재개정일	법령명	주요 내용
2013.3.23	대통령령 제24454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부표 1-5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3차 개정 (타법개정)

재개정일	법령명	주요 내용
2013.3.23	대통령령 제24800호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부록 2.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내용

〈부표 2-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정

재개정시기	주요 내용	규제내용
1962.6.12	제1조(화학적합성품의 지정) 제2조(제품검사) 제3조(제품검사의 신청) 제4조(제품검사의 방법 및 수수료) 제5조(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 제6조(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 제7조(식품의 종류) 제8조(식품위생관리인의 자격) 제9조(식품위생관리인의 신고) 제10조(영업의 지정) 제11조(영업허가의 신청) 제12조(예외 허가) 제13조(제조품목의 변경등의 허가) 제14조(조리사를 두어야 할 영업) 제15조(영양사를 두어야 할 집단급식소) 제16조(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구성) 제17조(위원의임기와 직무) 제18조(회의) 제19조(보고) 제20조(수당과 여비) 제21조(간사 및 서기) 제22조(운영세칙) 제23조(식중독 원인의 조사) 제24조(식중독에 관한 보고)	

136 식품분야 규제정책의 변화와 향후 식품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부표 2-2〉 제1차 개정(일부개정)

재개정시기	주요 내용	규제내용
1962.11.27	제2조 (제품검사)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할 수 있는 첨가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보건사회부장관이 행하는 것 삭카린나트륨 두루진 탈색소 및 그의 제제 니트로후라존 및 그의 제제 니트로후릴아크릴산아미드 및 그의 제제 과산화벤조일 카르브옥시메칠셀룰로스나트륨 2. 서울특별시, 도지사가 행하는 것 삭카린나트륨을 주요성분으로 하는 제제 두루진을 주요성분으로 하는 제제 황산칼슘 견수(중국식곡수 제조에 사용되는 알카리제)	강화

〈부표 2-3〉 제2차 개정(일부개정)

재개정시기	주요 내용	규제내용
1963.10.8	제2조 (제품검사) ①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할 수 있는 첨가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삭카린나트륨 2. 두루진 3. 사이크라민산나트륨 및 사이크라민산칼슘 4. 탈색소 및 탈색소를 주요성분으로 하는 제제 5. 삭카린 나트륨을 주요성분으로 하는 제제 6. 두루진을 주요성분으로 하는 제제 7. 사이크라민산나트륨 및 사이크라민산칼슘을 주요성분으로 하는 제제 ②전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첨가물에 대한 제품검사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제5호 내지 제7호의 첨가물에 대한 제품검사는 서울특별시·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행한다.	강화
	제3조(제품검사의 신청)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받아야 할 첨가물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2통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검사 수수료와 함께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강화

재개정시기	주요 내용	규제내용
	7. 삭카린나트륨을 주요성분으로 하는 제제, 두루찜을 주요성분으로 하는 제제, 사이크라민산나트륨 또는 사이크라민산칼슘을 주요성분으로 하는 제제 및 탈색소를 주요성분으로 하는 제제에 있어서는 배합중량비율(퍼센트)	
	제6조(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감시원은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도지사가 그 소속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식품위생감시원을 임명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강화
	제10조(영업의 지정)제1항제1호중 "여관"을 삭제 1. 음식점영업(구내식당, 식당, 병과점, 요리점, 호텔, 레스토랑, 주점, 빵, 카바레 기타 식품을 조리하거나 또는 설비를 갖추어 객에게 음식시키는 영업을 말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기타
	제11조(영업허가의 신청)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강화

〈부표 2-4〉 제3차 개정(일부개정)

재개정시기	주요 내용	규제내용
1966.11.26	제2조(제품검사) ①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할 수 있는 첨가물은 타알색소 및 타알색소를 주요성분으로 하는 제제로 한다. ② 전항의 첨가물에 대한 제품검사는 보건사회부장관이 행한다	기타
	제3조(제품검사의 신청)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받아야 할 첨가물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2통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검사 수수료와 함께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품명 2. 신청자의 성명,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3. 제조장소 또는 수입판매업소의 소재지 4. 제조 또는 수입 년월일	강화

138 식품분야 규제정책의 변화와 향후 식품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재개정시기	주요 내용	규제내용
	5. 신청수량 6. 소분용기의 용량별 개수 7. 티알색소를 주요성분으로 하는 제제에 있어서는 배합중량 비율 8. 제조업자가 자가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성적	
	제6조(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3.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규제전문학교에서 의학, 약학, 수의학, 축산학, 수산제조학·농화학·식품가공학·식품화학·식품영양학·위생학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4. 외국에서 의사·약사·수의사의 면허를 받은 자나 제1호 또는 제3호와 동등한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강화
	제7조(식품의 종류)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관리인을 두어야 할 식품은 햄, 소오세지, 베이컨, 인조버터, 유산균음료, 통조림·병조림 및 화학적합성품이외의 첨가물로 한다.	강화
	제10조(영업의 지정)	강화
	제11조(영업허가의 신청)①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조 제1항 각호의 영업중 제19호와 제33호중 수산물에 관한 업과 제28호·제34호 및 제35호에 해당하는 영업이외의 영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조제1호 또는 제13호의 영업으로서 그 영업이 2이상의 도(서울특별시·부산시를 포함한다)를 이동하며 행하는 것인 때에는 그 신청서를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를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주소·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영업소의 소재지 3.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4. 영업의 종류와 품목 5. 영업설비의 개요 및 평면도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전항의 경우 그 허가를 받고자 하는 영업이 전조제2호의 영업인 경우에는 인근주민의 동의서를 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전조제1항 각호의 영업중 제8호·제9호·제12호 및 제15호의 영업허가를 할 경	강화

재개정시기	주요 내용	규제내용
	<p>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따로 보건사회부와 농림부의 공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p> <p>④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조제34호 또는 제35호에 해당하는 영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⑤서울특별시·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조제1항제4호·제6호·제9호·제10호·제15호·제20호·제25호·제26호·제32호 및 제33호의 영업허가를 한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⑥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p>	
	<p>제13조(제조품목의 변경등의 허가) ①제10조제1항제34호 또는 제35호의 영업자가 그 제조품목·제조명칭 또는 제품의 배합성분이나 그 비율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② 제10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제10호·제18호·제20호·제26호·제27호·제30호 및 제33호의 영업자가 그 제조품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강화
	<p>제14조(조리사를 두어야 할 영업) 1.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영업중 구내식당·식당·레스토랑·카페·주점·요리점·빠아·카바레·나이트클럽·호텔 및 제37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중 보건사회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업</p>	강화
	<p>제15조(영양사를 두어야 할 집단급식소)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양사를 두어야 할 집단급식소는 계속적으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공급하는 시설로 한다.</p>	강화

140 식품분야 규제정책의 변화와 향후 식품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부표 2-5〉 제4차 개정(일부개정)

재개정시기	주요 내용	규제내용
1967.10.13	제1조(화학적합성품의 지정) ①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 기사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화학적 합성품은 별표와 같다.〈삭제〉	폐지
	제10조(영업의 지정)①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업종별시설기준을 정하여야 할 영업은 다음과 같다. 1. 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구내식당·음식판매겸영업과점·호텔·레스토랑·카페·선술집 기타 식품을 조리하거나 또는 설비를 갖추어 객에게 음식하게 하는 영업을 말하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38. 식초제조업(신설) 39.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정하는 영업	강화
	제13조 (제조품목허가) ①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품목마다, 허가를 받아야 할 식품제조업 또는 첨가물제조업은 다음과 같다. 1. 제10조제4호·제6호·제7호·제10호·제18호·제20호·제25호 내지 제27호·제30호·제32호 및 제33호(수산물을 원료로 제조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영업 2. 제10조제1항제34호 첨가물제조업중 제라핀·카라멜 또는 효모제조업 ②전항제1호의 식품제조업의 영업자가 그 제조품목의 허가(품목변경 및 추가를 포함한다)를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품목허가신청서를 당해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첨가물제조업 또는 화학적합성품인 첨가물제조업의 영업자가 그 제조품목의 허가(품목변경 또는 추가를 포함한다)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품목허가신청서를 당해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강화
	제25조(동업자조합설립에 있어서의 업종의 기준) 제26조(설립인가의 신청) 제27조(정관) 제28조(설립등기 등) 제29조(지구 등)	신설 9

재개정시기	주요 내용	규제내용
	제30조(정판변경의 인가) 제31조(임원취임신고) 제32조(감독) 제33조(업무 및 회계감사)	

〈부표 2-6〉 제5차 개정(일부개정)

재개정시기	주요 내용	규제내용
1968.9.12	제6조(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 〈단서삭제〉	완화

〈부표 2-7〉 제6차 개정 (전부개정)

재개정시기	주요 내용	규제내용
	제1조(제품검사)①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할 수 있는 식품은 인삼차 및 영양강화용 식품으로 하고, 첨가물을 타알색소 및 타알색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제제로 한다. ② 전항의 식품 및 첨가물에 대한 제품검사는 그 식품 또는 첨가물의 제조업 또는 소분업의 허가관청인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가 행한다.	신설
1970.7.20	제4조 (임검회수의 기준)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가 식품위생영업에 대하여 행하는 임검회수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임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강화
	제6조(식품위생관리인을 두어야 할 식품등의 제조업 및 가공업)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관리인을 두어야 할 식품 및 첨가물의 제조업 또는 가공업은 식육 및 어육제품·유 및 유제품(가공유포함)·마아가린·청량음료수·통조림·병조림·인스탄트식품·영양강화식품·인스탄트면류·간장·식용얼음·식초·카라멜·효모·제라핀 또는 미생물제제를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영업(주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것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강화

142 식품분야 규제정책의 변화와 향후 식품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재개정시기	주요 내용	규제내용
	제9조 (영업의 종류)	
	제10조(시설기준에 관한 협의) 보건사회부장관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조제10호·제14호·제16호(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업에 한한다) 제38호·제39호와 제40호(수산물에 관한 업에 한한다)의 업종에 관한 시설기준을 정할 때에는 농림부장관과 제26호의 업종에 관한 시설기준을 정할 때에는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강화
	제11조 (영업등의 허가 관청) ①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허가(영업장소 또는 시설의 변경허가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행한다. 1. 제9조제19호·제22호 및 제31호에 해당하는 영업의 허가는 보건사회부장관이 행한다. 2. 전호에 계기한营业을 제외한 제9조 각호의 영업의 허가는 그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행한다. 다만, 그 영업이 2이상의 도(서울특별시·부산시를 포함한다)에 걸치거나 수출을 주 목적으로 하는 영업의 허가는 보건사회부장관이 행한다. 3. 서울특별시·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제9조 각호의 영업 중 제10호·제14호·제16호(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업에 한한다)·제38호·제39호와 제40호(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업에 한한다)의 영업허가를 할 경우에는 전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따로 농림부와의 공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품목의 허가(제조품목의 변경 또는 추가의 허가를 포함한다)는 전항의 구분에 따라 이를 행한다.	신설
	제12조 (영업허가의 신청) ①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9조 각호의 영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전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허가관청이 보건사회부장관인 경우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주소·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영업소의 소재지 3.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4. 영업의 종류와 품목 5. 영업설비의 개요 및 평면도 ②전항의 경우에 그 허가를 받고자 하는 영업이 제9조제2호의 영업인 경우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근주	강화

재개정시기	주요 내용	규제내용
	<p>민의 동의서를 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p> <p>③서울특별시·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제9조제11호·제12호·제16호·제17호·제18호·제20호·제27호의 영업허가를 한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p>	
	<p>제13조(제조품목허가의 대상업종등) ①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품목마다 허가를 받아야 할 식품제조업 또는 첨가물제조업은 다음과 같다.</p> <p>1. 제9조제8호·제9호·제11호 내지 제13호·제15호 내지 제18호·제20호·제23호·제25호 및 제27호 내지 제30호에 해당하는 영업</p> <p>2. 제9조제19호 첨가물제조업중 제라썬·카라멜 또는 효모제조업과 제22호 및 제31호의 영업</p> <p>②제조품목의 허가 및 그 신청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p>	강화

〈부표 2-8〉 제7차 개정(일부개정)

재개정시기	주요 내용	규제내용
	<p>제5조(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3.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실업고등전문학교·전문학교·초급대학 또는 대학에서 의학·약학·수의학·축산학·수산제조학·농산제조학·농화학·식품가공학·식품화학·식품영양학 또는 위생학의 과정을 이수하여 졸업한 자(대학졸업자인 경우에는 학사학위등록을 한 자로 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p>	강화
1972.12.30	<p>제7조(식품위생관리인의 자격)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관리인은 제5조제2호 및 제3호(실업고등전문학교 또는 전문학교의 졸업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와 외국에서 이와 동등한 자격을 얻었거나 동등한 과정을 이수한 자라야 한다. 다만, 화학적합성품인 첨가물의 제조업 또는 가공업에 있어서의 식품위생관리인은 약사라야 한다.</p>	강화
	<p>제9조(영업의 종류) 4. 간이음식점영업(일시적 시설 또는 소규모시설의 음식점영업과 계절에 따라 행하는 음식점영업을 말한다)</p>	기타

144 식품분야 규제정책의 변화와 향후 식품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재개정시기	주요 내용	규제내용
	37. 식품소분업(식품 또는 첨가물의 완제품을 다시 용기에 넣어 소분제 포장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11조의2(영업허가의 범위) 제9조제37호에 해당하는 영업의 허가는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첨가물의 소분업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신설>	신설
	제13조(제조품목허가의 대상업종등)1. 제9조제8호·제9호(빵·병과류등의 제조설비와接客설비를 갖추고 동일장소안에서 제조하여 즉석 판매하는 영업은 제외한다)·제11호 내지 제13호·제15호 내지 제18호·제20호·제23호·제25호 및 제27호 내지 제30호에 해당하는 영업	기타
	제14조(조리사를 두어야 할 영업) 집단급식소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음식점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리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기숙사와 교도소·구치소·소년원 및 공무원교육원의 급식소는 제외한다. 1. 제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음식점영업. 다만, 한국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음식점으로서 탕반과 분식만을 판매하는 음식점과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음식점은 제외한다. 2. 제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흥음식점영업 3. 제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중 보건사회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업	강화
	제25조(동업자조합 설립에 있어서의 업종의 기준) <삭제>	폐지

<부표 2-9> 제8차 개정(일부개정)

재개정시기	주요 내용	규제내용
	제1조(제품검사)①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할 수 있는 식품은 영양강화식품으로 하고, 첨가물을 타알색소 및 타알색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체제로 한다.	완화
1973.6.23	제4조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 위생감시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직무를 행한다. 1. 시설기준의 적합여부에 관한 사항 2. 식품·첨가물 및 기구·용기·포장의 규격 및 기준에 적합여부에 관한 사항	강화

재개정시기	주요 내용	규제내용
	3.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와 표시기준의 위반여부에 관한 사항 4. 종업원의 건강진단 및 위생강습의 이행여부에 관한 사항 5. 식품위생관리인·조리사·영양사의 근무상태 및 이들의 준수 사항 이행여부에 관한 사항 6. 판매 또는 사용이 금지된 식품·첨가물·기구·용기·포장의 취급여부에 관한 사항 7. 행정처분의 이행여부에 관한 사항 8. 식품·첨가물·기구·용기 또는 포장의 압류·폐기등에 관한 사항 9. 영업자의 준수사항 이행여부에 관한 사항 10. 기타 식품·첨가물·기구·용기·포장 등의 단속에 관한 사항 ②전항의 직무수행을 위한 점검·수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 2. 의사·약사·수의사·위생사 또는 위생시험사 4. 외국에서 의사·약사·수의사·위생사 또는 위생시험사의 면허를 받은 자나 제1호 또는 제3호와 동등한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강화
	제6조(식품위생관리인을 두어야 할 식품등의 제조업 및 가공업)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관리인을 두어야 할 식품 및 첨가물의 제조업 또는 가공업은 식육 및 어육연제품·유 및 유제품(가공유포함)·마아가린·청량음료수·통조림·병조림·인스턴트식품(인스턴트면류를 포함한다)·영양강화식품·당류·장류·식용얼음·식초·화학적합성품이 아닌 첨가물을 제조하는 영업(주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것과 인삼 및 인삼제품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강화
	제7조(식품위생관리인의 자격)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관리인은 제5조제2호 및 제3호(실업고등전문학교·전문학교 또는 초급대학의 졸업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와 외국에서 이와 동등한 자격을 얻었거나 동등한 과정을 이수한 자라야 한다. 다만, 화학적합성품인 첨가물의 제조업에 있어서의 식품위생관리인은 약사라야 한다.	강화
	제9조(영업의 종류)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주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것과 인삼 및 인삼제품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은 제외한다.	강화

재개정시기	주요 내용	규제내용
	<p>3. 다과점영업(객석을 갖추고 주류이외의 음료수·다류·우유·빵류·빙과류 등을 판매하거나 이와 함께 면류·샌드위치등 경식사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영업과 객석을 갖추고 주로 빵류·양생과자류·빙과류 등을 제조하여 즉석에서 고객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p> <p>15. 어육연제품 제조업(어육 또는 고래고기 등을 주원료로 하여 햄·소세이지·베이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p> <p>22. 영양강화식품제조업(식품에 다른 영양소를 첨가하여 그 식품의 외관과 맛에 큰 변화없이 영양을 강화한 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p> <p>27. 인스턴트식품제조업(조리과정에 있어서 번잡과 긴 시간을 요하지 아니하고 식용에 공할 수 있으며 보존성이 높고 수송이 용이한 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p> <p>28. 고추가루 등 제조업(식품을 제조 또는 조리하는데 편리하도록 고추·후추·마늘류·계자·카레 또는 이와 유사한 천연식품자체를 원료로 하는 조미료를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p> <p>29. 건포류제조업(식육 또는 어패류를 단순히 건조하거나 조미하여 건조한 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p> <p>37. 식품소분업(식품 또는 첨가물의 완제품을 다시 용기에 넣어 소분 재포장하거나 분매하는 영업을 말한다)</p> <p>제31호와 제34호 삭제</p>	
	<p>제11조 (영업등의 허가 관청) ①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허가(영업장소 또는 시설의 변경허가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행한다.</p> <p>1. 제9조제19호 및 제22호에 해당하는 영업의 허가는 보건사회부장관이 행한다.</p> <p>2. 전호에 계기한 영업을 제외한 제9조 각호의 영업의 허가는 그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행한다. 다만, 수출을 주 목적으로 하는 영업의 허가는 보건사회부장관이 행한다.</p> <p>3.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제9조 각호의 영업 중 제10호·제14호·제16호(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업에 한한다)·제38호·제39호와 제40호(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업에 한한다)의 영업허가를 할 경우에는 전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따로 농림부와의 공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p>	기타
	<p>제12조(영업허가의 신청) ①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9조 각호의 영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전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허가관청이 보건사회부장관인 경</p>	강화

재개정시기	주요 내용	규제내용
	<p>우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부산시장 또는 도지사, 그 허가신청이 서울특별시·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인 경우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p> <p>6. 제조방법 설명서</p>	
	<p>제13조(제조품목허가의 대상업종등)1. 제9조제8호·제9호·제11호 내지 제13호·제15호 내지 제18호·제20호·제23호·제25호·제27호 및 제29호에 해당하는 영업, 다만, 제13호·제23호에 해당하는 영업으로서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고객이 제공한 원료로 수수료만을 받고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2. 제9조제19호 및 제22호에 해당하는 영업</p>	완화
	<p>제14조(조리사를 두어야 할 영업)제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흥음식점영업. 다만, 음식을 조리하지 아니하는 유흥음식점은 제외한다.</p>	기타
	<p>제16조(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위원 30인이내로 구성한다</p>	강화
	<p>제21조의2(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에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②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2인 이상 15인이내로 구성한다.</p> <p>③ 제18조의 규정은 분과위원회에 이를 준용하되,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분과위원회의 의결로써 위원회의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p>	신설
	<p>제34조(권한위임) 서울특별시·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제9조제11호·제12호·제16호·제17호·제18호·제27호 및 제11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영업이외의 영업에 대한 제11조제1항 제2호의 권한 및 법 제16조·법 제23조 내지 제26조의 권한을 보건소장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보건소장이 수입한 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p>	신설

148 식품분야 규제정책의 변화와 향후 식품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부표 2-10〉 제9차 개정(일부개정)

재개정시기	주요 내용	규제내용
1974.8.14	제9조(영업의 종류) 31. 보존음료수제조업(광천수, 약수등 음료수를 가공하거나 그대로 용기에 충전하여 포장하는 영업을 말한다)	강화
	제11조(영업등의 허가 관청) 1. 제9조제12호·제17호·제19호·제22호 및 제31호에 해당하는 영업의 허가는 보건사회부장관이 행한다.	기타
	제12조 (영업허가의 신청)③서울특별시·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제9조제11호·제16호·제18호·제20호·제21호·제23호(다만, 인스탄트면류에 한한다) 및 제27호의 영업허가를 한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타
	제34조 (권한위임) 서울특별시·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제9조제11호·제16호·제18호·제20호·제21호·제23호(다만, 인스탄트면류에 한한다)·제27호 및 제11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영업이외의 영업에 대한 제11조제1항제2호의 권한 및 법 제16조·법 제23조 내지 제26조의 권한을 보건소장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보건소장이 수입한 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기타

〈부표 2-11〉 제10차 개정(일부개정)

재개정시기	주요 내용	규제내용
1975.4.28	제6조(식품위생관리인을 두어야 할 식품등의 제조업 및 가공업)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관리인을 두어야 할 식품 및 첨가물의 제조업 또는 가공업은 식육 및 어육 연제품·유 및 유제품(가공유포함)·마아가린·쫄면유·청량음료수·유산균음료수·소오스류·아이스크림·통조림·병조림·인스탄트식품(인스탄트면류를 포함한다)·영양강화식품·당류·장류·식용얼음·식초·화학적합성품이 아닌 첨가물을 제조하는 영업(주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것과 인삼 및 인삼제품규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강화
	제9조(영업의 종류) 3. 양과점영업(객실과 객석을 갖추고 빵류·양생과자류·주류	강화

재개정시기	주요 내용	규제내용
	<p>이외의 음료수·우유·아이스크림류 등을 갖추거나, 제조하여 즉석에서 고객에게 음식하게 하거나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p> <p>5. 아이스크림제조업(아이스크림·아이스케이크·아이스샌디 등 식품이나 액체식품 또는 이에 다른 식품을 혼합한 것을 동결시킨 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p> <p>25. 당류제조업(설탕·포도당·과당등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p> <p>27. 인스탄트식품제조업(조리과정에 있어서 번잡과 긴시간을 요하지 아니하고 식용에 공할 수 있으며, 보존성이 높고 수송이 용이한 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으로서 다른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영업을 말한다)</p> <p>34. 다방영업(객실과 객석을 갖추고 고객에게 다류·주류 이외의 음료수, 우유등을 음식하게 하는 영업을 말한다)(신설)</p>	
	<p>제11조제1항제2호중 "전호"를 "제1호"로, 동항제3호중 "전호"를 "제2호"로, "농림부"를 "농수산부"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p>	기타
	<p>제11조의3(조건부영업허가의 대상업종) 법 제2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 영업은 제9조제5호 내지 제30호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한다.(신설)</p>	신설
	<p>제12조(영업허가의 신청)제12조 (영업허가의 신청) ① 법 제23조 및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제9조 각호의 영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허가관청이 보건사회부장관인 경우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부산시장 또는 도지사, 그 허가관청이 서울특별시·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인 경우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p> <p>1. 신청자의 주소·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p> <p>2. 영업소의 소재지</p> <p>3.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p> <p>4. 영업의 종류와 품목</p> <p>5. 영업설비의 개요 및 평면도</p> <p>6. 제조방법 설명서</p> <p>② 제1항의 경우에 그 허가를 받고자 하는 영업이 제9조제2호의 영업인 경우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근주민의 동의서를,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영업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p>	강화

150 식품분야 규제정책의 변화와 향후 식품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재개정시기	주요 내용	규제내용
	<p>1. 건물을 신축할 경우<신설> 가. 대지의 등기부등본(타인의 대지인 경우에는 임대계약서 사본 및 그 소유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할 것) 나. 건물신축개요서(건물위치도·평면도·구조개요 및 공사비 소요계산서를 첨부할 것) 다. 대지증명 또는 환지증명</p> <p>2. 기존건물을 사용할 경우<신설> 가. 대지증명 또는 환지증명 나. 건물위치도·평면도 및 구조개요 다. 가옥대장등본</p>	
	<p>제12조의2(조건이행신고) ①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보건사회부령이 정한 기간내에 그 조건을 이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허가관청이 보건사회부장관인 경우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인 경우, 그 허가관청이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인 경우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을 각각 거쳐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허가관청은 그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조건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p>	신설
	<p>제13조 (제조품목허가의 대상업종등) ①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품목마다 허가를 받아야 할 식품제조업 또는 첨가물제조업은 다음과 같다.</p> <p>1. 제9조제8호·제9호·제11호 내지 제13호·제15호 내지 제18호·제20호·제21호·제23호·제25호·제27호 내지 제30호에 해당하는 영업</p>	강화
	<p>제26조제2항 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p>	기타 2

〈부표 2-12〉 제11차 개정(일부개정)

재개정시기	주요 내용	규제내용
1975.12.31	제1조(제품검사) ①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할 수 있는 식품은 영양강화식품으로 하고, 첨가물은 타알색소, 타알색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제제, 방부제 및 제조품목 허가 후 2년 이내에 생산되는 신개발 제품으로 한다.	강화
	제5조(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② 보건사회부장관은 제1항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만으로는 식품위생감시원의 인력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식품위생행정에 종사하는 자 중 소정의 훈련을 2주이상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식품위생행정에 종사하는 기간동안 잠정적으로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신설>	강화
	제6조 (식품위생관리인을 두어야 할 업종) 법 제19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및 첨가물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사업자"라 함은 화학적합성품이 아닌 첨가물 제조업과 제9조제11호 내지 제15호, 제18호 내지 제24호, 제26호 내지 제28호, 제30호 내지 제33호의 영업종 상시 10인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는 제조업 또는 가공업의 영업자를 말한다. 다만, 주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았거나 인삼및인삼제품규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영업의 영업자는 제외한다.	기타
	제9조(영업의 종류)<전부개정>	강화
	제9조의2(영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 제9조제1호 내지 제10호에 규정된 음식점 등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9조제1호 내지 제10호에 규정된 음식점 등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영업소의 명칭 이외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며 표방간판에는 반드시 허가업종을 병기하여야 한다. ③ 제9조제1호 내지 제10호의 영업의 허가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허가조건으로 부하여야 한다.	신설
	제14조(조리사를 두어야 할 영업)1. 제9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음식점영업·대중음식점영업. 다만, 한국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음식점으로서 탕반과 분식만을 판매하는 음식점과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음식점은 제외한다. 2. 제9조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유희음식점영업·특수유희음식점영업·유희전문음식점영업. 다만, 음식물을 조리하지 아니하는 유희음식점은 제외한다.	기타

152 식품분야 규제정책의 변화와 향후 식품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재개정시기	주요 내용	규제내용
	제34조(권한위임) 서울특별시·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제9조제17호·제22호·제24호·제26호·제27호·제29호(다만, 인스탄트면류에 한 한다) 제33호 및 제11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영업 이외의 영업에 대한 제11조제1항제2호의 권한 및 법 제16조·법 제23조 내지 제26조의 권한을 구청장(서울특별시 및 부산시에 한한다)·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기타

<부표 2-13> 제12차 개정(일부개정)

재개정시기	주요 내용	규제내용
	제5조(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 2. 의사·약사·수의사·위생사, 위생시험사 또는 식품제조가공기사 4. 외국에서 의사·약사·수의사·위생사, 위생시험사 또는 식품제조가공기사의 면허를 받은 자나 제1호 또는 제3호와 동등한 과정을 이수한 자로써 보건사회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강화
1977.3.8	제9조(영업의 종류) 28. 영양식품제조업(식품에 영양성분을 첨가하거나 제거하여 유아용, 환자용, 임산부용 등 특수한 용도에 공하는 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34. 조미료제조업(식품을 제조 또는 조리하는데 편리하도록 고추, 후추, 마늘류, 겨자, 카레 또는 이와 유사한 천연식품 자체를 원료로 하는 조미료를 제조하거나 마요네스, 케첩 등 조미료를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기타

<부표 2-14> 제13차 개정(일부개정)

재개정시기	주요 내용	규제내용
1979.11.24	제1조 (제품검사) ①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할 수 있는 식품은 영양식품(제9조제28호의 영양식품제조업에 의하여 제조되는 식품을 말한다)으로 하고, 첨가물은 타알색소, 타알색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제제, 방부제 및 제조품목 허가 후 2년 이내에 생산되는 신개발 제품으로 한다	기타
	제5조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 ①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감시원은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서울	강화

재개정시기	주요 내용	규제내용
	<p>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가 그 소속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임명한다.</p> <p>3.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대학에서 의학·약학·수의학·축산학·수산제조학·농산제조학·농화학·식품공학·식품화학·식품영양학 또는 위생학의 과정을 이수하여 졸업한 자(대학졸업자인 경우에는 학사학위등록을 한 자로 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p>	
	<p>제6조 (식품위생관리인을 두어야 할 업종)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및 첨가물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영업자"라 함은 화학적합성품이 아닌 첨가물 제조업과 제9조제11호 내지 제15호, 제18호 내지 제24호, 제26호 내지 제28호·제29호(다만, 인스탄트면류에 한한다)·제30호 내지 제33호 및 제37호의 제조업 또는 가공업의 영업자를 말한다. 다만, 주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았거나 인삼및인삼제품규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영업의 영업자는 제외한다.</p> <p>② 화학적합성품이 아닌 식품이나 첨가물제조업 또는 가공업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종업원이 상시 10인미만인 때에는 식품위생관리인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p>	완화

〈부표 2-15〉 제14차 개정 (일부개정)

재개정시기	주요 내용	규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검사대상에서 영양식품을 제외함 - 제1조(제품검사) 	완화
1981.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위생관리인을 1종과 2종으로 구분하고, 1종은 종업원 20인 이상의 식품제조가공업소에, 2종은 종업원 20인미만의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두도록 함(중전에는 식품가공업과 종업원 10인미만의 일부 식품제조업소등에는 식품위생관리인을 두지 않을 수 있었음) - 제6조(식품위생관리인을 두어야 할 업종) - 제7조(식품위생관리인의 자격) 	강화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의 종류를 유형별로 정리하고, 식품자동판매기영업등의 업종을 신설함 - 제9조(영업의 종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음식점영업·식용얼음판매영업·식품자동판매기영업·유류판매영업·식품판매영업등은 신고에 의하여 영업을 할 수 있게 함(중전에는 허가제였음) - 제11조의3 (영업의 신고대상업종) 	완화

154 식품분야 규제정책의 변화와 향후 식품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부표 2-16〉 제15차 개정 (일부개정)

재개정시기	주요 내용	규제내용
1982.10.21	○ 대중음식점영업에 포함되어 있던 간이주점을 별도의 업종으로 분리·신설하는 동시에 대중음식점영업을 대중음식점과 인삼차집으로 나누고, 현행 카바레·나이트클럽·요정·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으로 나누어진 유흥음식점영업을 일반·무도·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으로 나누도록 함 - 제9조(영업의 종류)제1항제1호·1호의2 및 3호	강화
	○ 다른 업종과 혼동의 우려가 있는 아이스크림제조업·통조림 또는 병조림제조업·청량음료 또는 과채류 등 음료제조업·인스턴트식품제조업·식품가공업·위생처리업등의 영업범위를 명확하게 함 - 제9조(영업의 종류)제1항제7호·15호·17호·21호·24호·30호 및 47호).	강화
	○ 현행 영업소마다 두게되어 있는 식품위생관리인,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동종의 영업자들은 2종 식품위생관리인을 개별적으로 두는 대신에 동일 시·군·구안에서는 공동으로 1종 식품위생관리인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영세업자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함 - 제6조(식품위생관리인을 두어야 할 업종)제2항	강화
	○ 조리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는 집단급식소의 범위에 그 종사자의 급식만을 목적으로 설치된 집단급식소를 추가하여 일반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함 - 제14조(조리사를 두어야 할 영업)	완화
	○ 영양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는 집단급식소의 범위에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한 중소기업의 집단급식소를 추가하여 이들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함 - 제15조(영양사를 두어야 할 영업)	완화

〈부표 2-17〉 제16차 개정 (일부개정)

재개정시기	주요 내용	규제내용
1984.4.13	○ 보건사회부장관이 관장하는 통조림 또는 병조림제조업의 허가에 관한 업무를 도지사가 관장하도록 함. - 제11조(영업의 허가 및 신고관청)	강화
	○ 대중음식점 영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함. - 제11조의3(영업의 신고대상업종)	강화

〈부표 2-18〉 제17차 개정 (일부개정)

재개정시기	주요 내용	규제내용
1985.6.29	○ 1종 식품위생관리인을 두어야 할 업종에 수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통·병조림제조업과, 축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유가공품제조업·유처리업 및 식육제품제조업을 추가함 - 제6조(식품위생관리인을 두어야할 업종)제1호	강화
	○ 자가품질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식품위생관리인의 직무를 신설함으로써 자가품질관리를 강화하도록 함. - 제7조의2 (식품위생관리인의 직무)	신설
	○ 49개업종으로 세분되어 있는 식품관계영업중 유사한 업종을 통합하여 36개업종으로 조정함 - 제9조(영업의 종류)제1항	강화

〈부표 2-19〉 제18차 개정 (전부개정)

재개정시기	주요 내용	규제내용
1986.11.11	○ 영업의 종류 중 일부분의 업종에 대한 정의를 식품등의 개발에 맞추어 조정하고 도시락제조업을 새로이 신설함. - 제7조(영업의 종류)	강화
	○ 동업자조합은 업종별로 설립하되 특수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2이상의 업종이 하나의 조합을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되, 하나의 지구에 같은 업종의 동업자조합을 2이상 설립할 수 없도록 함. - 제29조(지구 등)	강화
	○ 동업자조합연합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분의 2이상의 조합의 동의를 얻어 보건사회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 제30조(연합회의 설립)	신설
	○ 동업자조합 또는 그 연합회에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자율지도원은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등이 있는 자중에서 조합장 또는 연합회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자율지도원의 직무범위를 정함. - 제32조(자율지도원의 자격 및 임면) - 제33조(자율지도원의 직무)	신설 2

156 식품분야 규제정책의 변화와 향후 식품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재개정시기	주요 내용	규제내용
	○ 한국식품공업협회의 당연회원의 범위는 가입연도전 3년간의 년평균 매출액이 10억이상인 식품제조·가공업 및 첨가 물제조업의 영업자로 함. -제34조(한국식품공업협회의 당연회원의 범위).	신설
	○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위생시설의 개수를 명할 수 있는 시 설의 범위를 당해 건축물내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상하수 도·화장실등으로 정함. - 제35조(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시설개수의 명령)	신설
	○ 과징금의 부과절차 및 산정기준을 정함 - 제38조(과징금의 산정기준)	신설
	○ 식품진흥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제44조(기금의 운용 계획) - 제45조(기금용자업무의 위탁관리) - 제46조(용자업무계획의 승인) - 제47조(용자금리 등) - 제48조(대여기금의 납입 및 수납) - 제49조(기금의 회계기관) - 제50조(기금 계정) - 제51조(기금의 지출한도액)	신설
	제52조(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에 대한 처분) 제53조(권한의 위임) 제54조(과태료의 부과)	신설

〈부표 2-20〉 제19차 개정 (일부개정)

재개정시기	주요 내용	규제내용
1987.7.13	○ 종전의 인삼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제품검사를 받던 당삼을 제외한 백삼제품이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이러한 인삼제품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제품 검사를 받도록 함. - 제3조(제품검사)제1항.	강화
	○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영업을 하여야 할 식품제조·가공업의 종류에 인삼을 원료로 한 제품을 제 조·가공하는 인삼제품제조·가공업을 추가함. - 제7조(영업의 종류)제1호 처목	강화

재개정시기	주요 내용	규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양등 식품제조업의 범위에 유아·병약자들을 위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식용원료에 영양성분을 가감하여 만든 일반영양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외에 식용원료에 들어 있는 특정성분을 추출 농축하여 만든 특수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을 추가함. - 제7조(영업의 종류)제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삼제품제조·가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영업허가 및 품목제조허가를 받도록 함. - 제10조(영업의 허가관청)제1호 	강화

〈부표 2-21〉 제20차 개정 (타법개정)

재개정시기	주요 내용	규제내용
1988.6.27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개정	기타

〈부표 2-22〉 제21차 개정 (일부개정)

재개정시기	주요 내용	규제내용
1989.7.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치를 전통식품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종전에 절임식품에 속하여 있던 것을 독립업종으로 분류하는 등 식품관련영업의 일부 업종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 제7조(영업의 종류)제1호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편식이용의 증가 등 식생활방식의 변화에 따라 종전에는 대중음식점영업에 속하여 있던 간편식조리판매업을 일반조리판매업 및 이동조리판매업의 독립업종으로 분류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출장조리판매업을 신설함 - 제7조(영업의 종류)제8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전에는 자유업종이었던 백화점내의 식품판매업등에 대한 위생관리 및 판매질서유지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이들 영업을 독립된 신고대상 영업으로 전환함 - 제7조(영업의 종류)제4호 - 제13조(영업의 신고를 하여야 할 업종)제1호 	강화

158 식품분야 규제정책의 변화와 향후 식품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재개정시기	주요 내용	규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내 위치한 절임식품제조업, 압착식용유제조업등 영세제조업소에 일정한 자격이나 경력을 갖춘 식품위생관리인을 두도록 하던 것을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를 식품위생관리인으로 둘 수 있도록 완화함으로써 영세업소의 부담을 줄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함 - 제15조(식품위생관리인을 두어야 할 업종)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개정으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의 최고한도액이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과징금의 액수를 상향조정하고, 과징금의 부과등급을 종전의 13등급에서 33등급으로 세분하여 과징금부과의 공평을 기함 - 제38조(과징금의 산정기준) 	강화

간행물회원제 안내

▶ 회원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 회원종류

- 전체간행물회원 : 120,000원
- 보건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사회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정기간행물회원 : 35,000원

▶ 가입방법

- 홈페이지(www.kihasa.re.kr) - 발간자료 - 간행물구독안내

▶ 회비납부

-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카드 결제
-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 019-219956-01-014 (예금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문의처

- (122-705)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담당자 (Tel: 02-380-8157)

KIHASA 도서 판매처

- | | |
|---|---|
| ■ 한국경제서적(총판) 737-7498 |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 ■ 영풍문고(종로점) 399-5600 | ■ 서울문고(종로점) 2198-2307 |
| ■ Yes24 http://www.yes24.com |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 |

발간번호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연구 2013-01	근거중심보건의정확에 필요한 연구근거 현황 및 활용	김남순
연구 2013-02	국민건강증진기금사업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김혜연
연구 2013-03	의료서비스시장의 경쟁구조 및 경영효율성에 관한 연구	김대중
연구 2013-04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의 소비자 위상과 권리	윤강재
연구 2013-05	식품분야 규제정책의 변화와 향후 식품안전 관리강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정기혜
연구 2013-06	화장품 및 의약품에 대한 소비자 중심적 연구	김정선
연구 2013-07	보건의료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박은자
연구 2013-08	진료비지출 요인분석 및 거시적 관리방안	신현용
연구 2013-09	의약품 정책이 의사의 처방에 미친 영향 연구	박실비아
연구 2013-10	한국의 건강불평등 지표와 정책과제	김동진
연구 2013-11	한국 의료의 질 보고서 설계	강희정
연구 2013-12	국민연금기금운용 중장기 정책수립 -기금운용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실증적 연구	원종욱
연구 2013-13	소득분배 악화의 산업구조적 원인과 대응 방안	강신욱
연구 2013-14	소득계층별 순소득 부담의 분포에 관한 연구	남상호
연구 2013-15	저소득층 현금 및 현금서비스 복지지출의 사회경제적 영향분석	김태완
연구 2013-16	기회의 불평등 측정에 관한 연구: 성장배경을 중심으로	김문길
연구 2013-17	2013년 빈곤통계연보	노대명/임완섭
연구 2013-18	고용-복지 연계정책의 국제비교 연구: 한중일의 최근 정책변화를 중심으로	노대명
연구 2013-19	근로 및 사회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분석	이현주
연구 2013-20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 연구(3차): 취약계층의 삶을 중심으로	김미근
연구 2013-21	사회서비스 수요·공급의 지역단위 분석 연구	박세경
연구 2013-22	사회복지영역의 평가제도 분석 및 개선방안	정홍원
연구 2013-23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방안: 발달장애인을 중심으로	김성희
연구 2013-24	장애인지원서비스의 질과 공급특성 분석 연구	박수지
연구 2013-25	복지재정 DB구축과 지표 분석	박인화
연구 2013-26	중앙과 지방의 복지재정형평화 연구	고재이
연구 2013-27	사회보장 중장기 재정추계 모형개발을 위한 연구	신화연
연구 2013-28	사회보장 재원조달에서의 세대 간 형평성 재고방안 연구	유근춘
연구 2013-29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보호현황과 대책	정영철
연구 2013-30	우리나라 아동빈곤의 특성	정은희
연구 2013-31-01	한중일 인구동향과 국가 인구전략	이삼식
연구 2013-31-02	인구에측모형 국제비교 연구	이삼식
연구 2013-31-03	자녀 양육 지원 정책 평가와 개선 방안	신윤정
연구 2013-31-04	보육서비스 공급 적정성 분석 및 개선방안	김은정
연구 2013-31-05	아동보호체계 연계성 재고방안	김미숙
연구 2013-31-06	여성고용 활성화 방안 연구	여유진
연구 2013-31-07	출산·보육 통계생산 및 관리효율화 연구	도세록

발간번호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연구 2013-31-08	가구·가족의 변동과 정책적 함의	김유경
연구 2013-31-09	저출산·고령화 대응 인구 자질 향상 방안: 고령 임신부의 출산 실태와 정책 과제	이소영
연구 2013-31-10	저출산고령사회에서의 일차의료기관 모형개발	황나미
연구 2013-31-11	저출산고령사회 동태적분석을 위한 지역 추적조사: 사례지역을 중심으로	오영희
연구 2013-31-12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한국 가족주의에 대한 진단과 정책적 함의	외부위탁
연구 2013-31-13	남북한 통합 시 적정인구 연구	이삼식
연구 2013-31-14	중노년층의 삶의 질과 정책과제	정경희
연구 2013-31-15	고령화 대응 노인복지서비스 수요전망과 공급체계 개편연구	이윤경
연구 2013-31-16	다중노후소득보장체계 관점에서의 공적연금제도 개편 방안	윤석명
연구 2013-31-17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질 관리체계 개선방안	신우덕
연구 2013-31-18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역할정립방안연구: 연계방안을 중심으로	김진수
연구 2013-31-19	효과적 만성질환 관리방안 연구	정영호
연구 2013-31-20	인구고령화가 소비구조 및 산업생산에 미치는 영향 연구	외부위탁
연구 2013-31-21	여성노인의 노후민권 현황 및 대응정책	외부위탁
연구 2013-31-22	농촌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한 농촌 경제활성화 방안 연구	외부위탁
연구 2013-31-23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인식 및 욕구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이삼식
연구 2013-31-24	평생교육관점에서 바라본 노년교육의 현황과 정책과제	염주희
연구 2013-32-1	지방자치단체의 건강영향평가 및 지식포털운영	서미경
연구 2013-32-2	건강영향평가(TWC)성과평가 및 건강행태위험요인의 사회경제적 격차감소를 위한 전략평가	최은진
연구 2013-33	아시아국가의 사회정책 비교연구: 건강보장	홍석표
연구 2013-34	취약위기가족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관리 연구(4년차)	정은희
연구 2013-35	2013년 친서민정책으로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전략III: 사회서비스산업-제3섹터-고용창출 연계 모델	이철선
연구 2013-36	2013년 보건복지통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오미애
연구 2013-37	인터넷 건강정보 게이트웨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빅 데이터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송태민
연구 2013-38	2013년 사회정신건강 연구센터 운영: 한국사회의 갈등 및 병리현상의 발생현황과 원인분석 연구	이상영
연구 2013-39	2013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 평가센터 운영	김승권
연구 2013-40-1	2013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이현주
연구 2013-40-2	2013년 한국복지패널 심층분석 보고서: 신규 표본가구 통합DB(KOWEPS_Combined)을 중심으로	최현수
연구 2013-41	2011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 보고서(II): 만성질환관리, 일반의약품이용, 임신·출산, 부가조사	최정수
협동 2013-1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3년차)	오영호
협동 2013-2	가임기 임신 전 출산건강 관리지원 방안 연구	이상림